

# 2025 연간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 CONTENTS



## 총론

제1장 일반현황	10
제2장 2025년도 위원회 정책성과	20



##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	24
제1절 개요	24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25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31
제4절 평가	47
제2장 시정권고	49
제1절 개요	49
제2절 주요 추진실적	50
제3절 평가	56
제3장 선거기사심의	58
제1절 개요	58
제2절 주요 추진실적	60
제3절 평가	70



##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1장 언론피해 상담	74
제1절 개요	74
제2절 주요 실적	75
제3절 평가	79
제2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81
제1절 개요	8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83
제3절 평가	92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93
제1절 개요	9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94
제3절 평가	112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114
제1절 개요	114
제2절 주요 조사결과	115
제3절 평가	119
제5장 홍보	121
제1절 개요	12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21
제3절 평가	131
제6장 기타 주요활동	132

# CONTENTS



## 2026년도 업무계획

1. 2026년도 위원회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38
2. 2026년도 위원회 핵심 추진과제	139
3. 2026년도 위원회 정책 목표 및 세부과제	140

## 부록

1. 중재위원 현황	146
2. 2025년 예·결산 현황	155
3. 2025년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155
4. 2025년 주요 발간물 목록	156

## 표 목차

표 1. 최근 3년간 조정 청구현황	25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6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6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7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8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9
표 7.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31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31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32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33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35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중 금전배상 비율	35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36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36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37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8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9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0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개인)	42
표 20.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단체)	44
표 21. 중재부별 처리결과	45
표 22.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51
표 23. 시정권고 수용 사례 안내문 일부	55
표 2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56
표 25.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60
표 26.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62
표 27.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65
표 28. 최근 3년간 상담경로	75
표 29. 최근 3년간 상담 처리결과	76
표 30. 최근 3년간 상담매체 유형	77
표 31. 최근 3년간 상담대상 유형	78
표 32. 최근 3년간 피해구제수단	79
표 33. 2025년도 교육 실시현황	82
표 34.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83
표 35. <언론인 전문 연수> 실시현황	84
표 36.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현황	85
표 37. <예비 법조인 연수> 실시현황	86
표 38. <대학생 연수> 실시현황	87
표 39. <맞춤형 위탁 연수> 실시현황	88
표 40. <일반인 연수> 실시현황	89

# 2025년 주요행사



태국언론평의회 의장 방문  
3. 24.



창립44주년 기념식  
3. 28.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학술세미나  
6. 13.



해외학술연구협력  
6. 20. ~ 6. 22.



하계 예비 법조인 연수  
8. 18. ~ 8. 22.



모의조정대회  
9. 25.



중재위원 연수  
10. 31. ~ 11. 1



해외언론포해구제기구 교류 협력  
11. 24.~ 11. 29.



위원총회  
12. 1.



제18대 최완주 위원장 취임식  
12. 1.



토론회  
12. 4.



# PART

---

---

---

# 총론

## 제1장 일반현황

1. 설립근거 및 기능
2. 연혁
3. 임원 명단
4. 기구
5. 위원회의 미션과 비전

## 제2장 2025년도 위원회 정책성과

1. 추진과제 및 주요성과

## 제1장

# 일반현황

### 1 설립근거 및 기능

#### 가. 설립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 심의 및 시정권고
-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심의
-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방법 안내
-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분쟁해결 전문교육
-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980	1981.03.31.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 제1기 중재위원 39명 위촉 - 안우만 위원장(제1·2대) 취임 - 서울 4개 중재부와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지역중재부 설치(총 13개 중재부) - 사무국(서울 중구 의주로 1가 1 백초빌딩) 및 9개 지역사무소 설치
	1981.04.29.	언론중재위원회 헌판식(사무국)
	1984.03.02.	경남중재부 신설
	1985.04.03.	임규운 위원장(제3대) 취임
	1985.04.21.	사무국을 현주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5층)로 이전
	1986.02.24.	정희택 위원장(제4~6대) 취임
	1987.11.2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 -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
1990	1991.03.29.	창립 1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993.03.31.	김두현 위원장(제7·8대) 취임
	1995.12.30.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직권조정결정권' 부여 등
	1996.07.01.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 - 서울 제5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75인으로 증원
	1999.04.09.	박영식 위원장(제9·10대) 취임
2000	2000.02.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개정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시 언론중재 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2001.03.30.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2004.04.01.	상담 및 교육 전담 부서 신설
	2005.0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도입 -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가능 - 인터넷신문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2000	2005.03.31.	조준희 위원장(제11대) 취임
	2005.07.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5.09.02.	서울 제6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80명으로 증원
	2006.06.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언론중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합헌 - 시정권고제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 각하 -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가처분으로 하는 규정은 위헌
	2007.04.27.	위원회 새 CI 선포
	2008.04.07.	권 성 위원장(제12·13대) 취임
	2009.02.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등 접수시 청구사실을 표시함 -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 폐지
	2009.08.07.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09.01.	서울 제7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85명으로 증원
	2010	2010.01.25.
2011.04.11.		창립 30주년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14.03.31.		서울 제8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90명으로 증원
2014.04.29.		박용상 위원장(제14대) 취임
2015.07.30.		「공직선거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명령은 위헌
2017.01.01.		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9호)
2017.02.08.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고결정문 도입 등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유형 다양화
2017.08.28.		양인석 위원장(제15대) 취임
2018.09.17.		이석형 위원장(제16대·17대) 취임
2020	2020.11.02.	언론법제 전문 학술지 「미디어와 인권권」 등재지 선정
	2021.03.30.	창립 40주년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6층 위원회 회의실)
	2025.01.14.	연구센터 설치
	2025.05.28.	지역총괄실 신설
	2025.12.01.	최완주 위원장(제18대) 취임

### 3 임원 명단

(2025년 12월 말 현재)

성명	주요경력	중재부
 위원장 <b>최완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행정법원 법원장</li> <li>•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및 부장판사</li> <li>• (현)제18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변호사</li> </ul>	서울제5중재부
 부위원장 <b>이춘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이사, 도쿄특파원, 기자</li> <li>•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li> <li>• 한국기자협회 회장</li> </ul>	서울제6중재부
 부위원장 <b>신옥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 위원</li> <li>• (현)한국국가법학회 회장</li> <li>• (현)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ul>	전북중재부
 감사 <b>이철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li> <li>•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원장</li> <li>• (현)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li> </ul>	광주중재부
 감사 <b>하채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li> <li>• (현)매일 법률사무소 변호사</li> <li>• (현)대한변호사협회 제2국제이사</li> </ul>	서울제5중재부

## 4 기구

### 가. 위원총회

- 구성 : 중재위원 90명
- 기능
  -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 사업실적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 나. 운영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9명
- 기능
  -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
  -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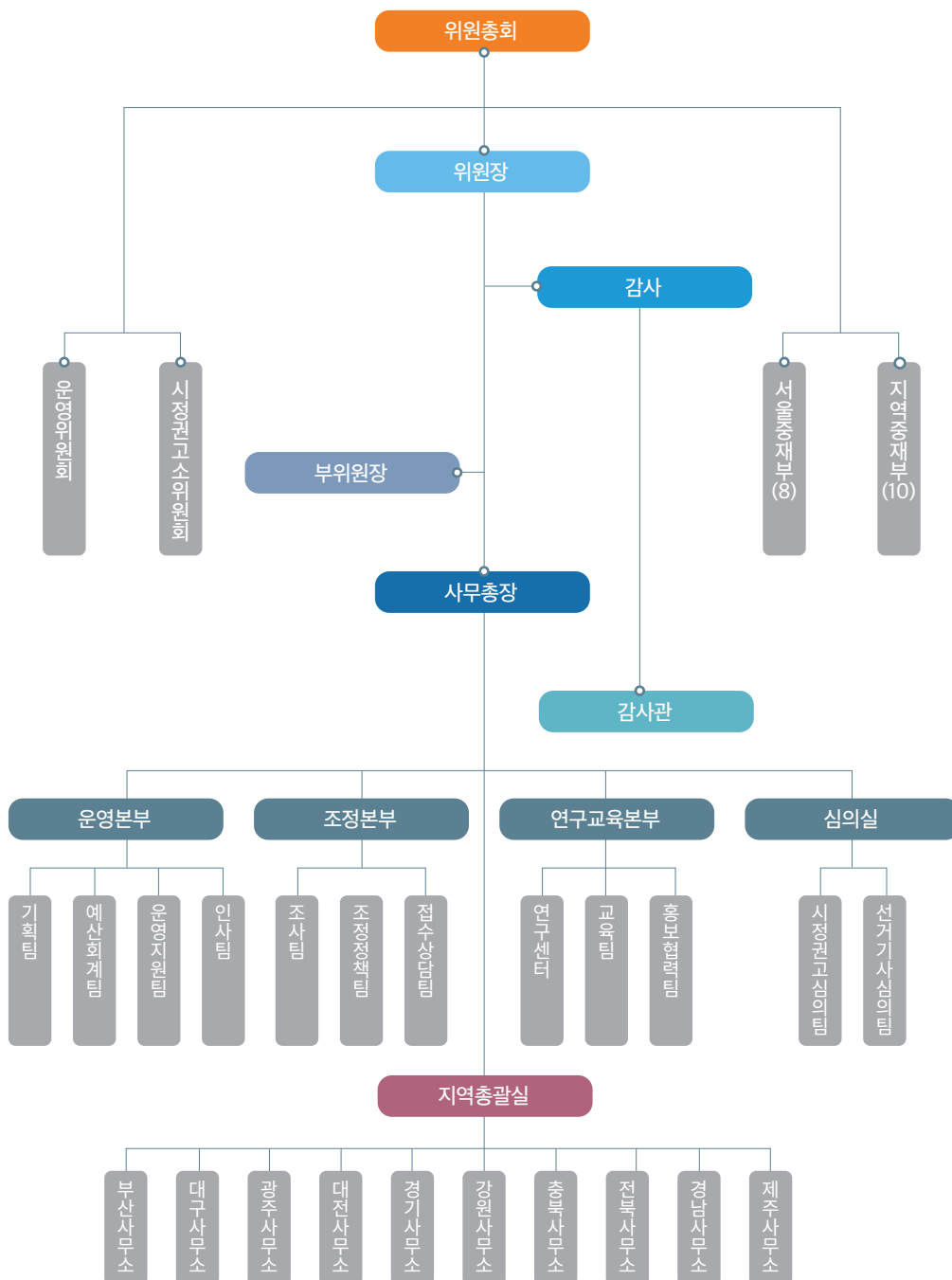
### 다. 시정권고소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7명
- 기능
  -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
  - 시정권고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

### 라. 중재부

- 구성 : 중재위원 5명
  - 전국 18개 중재부(서울 8개 중재부, 지역 10개 중재부)
- 기능
  - 조정·중재신청에 따라 조정·중재업무 처리

마. 위원회 기구표



## 바. 사무처


### • 인원 현황

(단위 : 명 / 2025. 12. 31. 현재)

구분	별정직	일반직	계
정원	1	99	100
현원	1	100	101

\* 대체인력 및 기간제 등 포함

### • 사무총장

성명	주요경력
 <p>사무총장 김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 접수상담팀장</li> <li>•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 조사1팀장</li> <li>•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li> </ul>

### • 부서별 주요업무

부서	주요업무
운영 본부	<p>기획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 및 평가</li> <li>• 중재위원 위·해촉 관련 업무</li> <li>•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진행</li> <li>• 위원회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li> <li>• 위원회 관련 법률의 유권해석 및 소송업무 총괄</li> <li>• 위원회 내부 규정의 관리</li> <li>• 위원회 관련 대외기관 협력</li> <li>• 국정감사 수감 등 국회 업무협조 관련 업무</li> <li>• 연간보고서,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발간</li> <li>• 위원회 경영정보 관리 및 정보공개청구 관련 업무</li> <li>• 제안제도 운영 등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ul>
	<p>예산회계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의 편성, 관리 및 조정</li> <li>• 예산 사업의 심사, 분석 및 평가</li> <li>• 예산의 집행 및 결산 관련 업무</li> <li>• 회계 관련 외부 평가 및 공인회계사 감사 수감</li> <li>• 위원회 성과지표 관리</li> </ul>

	부서	주요업무
운영 본부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의 복리후생 및 국내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li> <li>• 위원회 자산 및 시설의 관리·유지</li> <li>•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li> <li>• 위원회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 및 폐기</li> <li>•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직원그룹웨어,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li> <li>• 위원회 정보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li> <li>• 위원회 계약 체결 관련 업무</li> <li>• 재난관리 및 보안 관련 업무</li> <li>• 사회공헌활동 관련 업무</li> </ul>
	인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성과평가 등 각종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력 운용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 노무 관련 업무</li> <li>• 인사프로그램의 운영·관리</li> <li>• 복무관리 운영 총괄</li> <li>•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인사·급여연동 복리후생 관리</li> </ul>
조정 본부	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중재부 조정중재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기록 관리, 사실조회 및 증거조사 포함)</li> </ul>
	조정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중재 실무절차 및 제도 개선</li> <li>• 조정중재 업무와 관련한 소위원회의 운영</li> <li>• 조사관 공식 지역중재부 조정중재 사건처리 (기록 관리, 사실조회 및 증거조사 포함)</li> <li>• 법원 소제기 현황</li> <li>• 조정중재시스템, 조정중재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 관리</li> <li>• 조정중재사례집, 조사관 업무가이드 발간</li> <li>• 조정중재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검토</li> <li>• 중재위원 연수 진행</li> <li>• 조사관 직무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실행</li> </ul>
	접수상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피해구제 관련 지역별 상담업무 총괄</li> <li>• 조정신청 관련 상담 및 신청서 접수</li> <li>• 상담 관련 통계 관리</li> <li>• 상담실무매뉴얼, 언론피해상담사례집 발간</li> <li>• 전자신청시스템 관리</li> </ul>
연구 교육 본부	연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법제 관련 각종 제도·정책의 학술연구 및 관련 연구용역 사업</li> <li>• 학술지, 계간지(언론중재),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연구보고서 발간</li> <li>• 토론회 등 위원회 학술관련 행사 주관</li> <li>• 국내외 언론유관기관 동향 및 현황자료 수집</li> <li>• 위원회 자료실 및 학술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li> </ul>

부서		주요업무
연구 교육 본부	교육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피해구제 등 위원회 교육 관련 업무</li> <li>• 위원회 교육 관련 통계 관리</li> <li>• 대내외 교육 강사진의 운영 및 관리</li> <li>• 교육 관련 대외 협력 업무</li> <li>• 교육교재 발간</li> </ul>
	홍보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대외홍보 관련 업무 총괄</li> <li>• 광고 등의 제작 및 집행</li> <li>• 위원회 대외홍보 매체 및 홍보책자의 발행, 운영 및 관리</li> <li>• 위원회 홍보 관련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관리</li> <li>• 위원회 대외 홍보물품의 제작 및 관리</li> <li>•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 등 국외협력사업</li> </ul>
심의실	시정권고심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권고소위원회 업무 지원</li> <li>• 시정권고 관련 업무 전국 네트워크 총괄</li> <li>• 시정권고 관련 통계 관리</li> <li>• 시정권고사례집 발간</li> <li>• 시정권고시스템 관리</li> </ul>
	선거기사심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업무 지원</li> <li>• 선거기사심의위원 위·해촉 관련 업무</li> <li>• 선거기사심의시스템, 선거기사심의 관련 통계관리 및 심의대상 매체 구독 관리</li> <li>• 선거기사심의백서 발간 및 심의 관련 교육</li> </ul>
지역총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중재부 조정중재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li> <li>• 지역중재부 조정중재 사건의 기록 관리</li> <li>• 지역중재부 조정중재 관련 사실조회 및 증거조사</li> <li>•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업무 지원</li> <li>• 언론피해구제 관련 상담 및 신청서 접수</li> <li>• 지역 내 위원회 교육 실시 및 지원</li> <li>• 지역사무소의 회계, 자산, 시설관리 업무</li> <li>• 지역 개최 위원회 행사의 지원</li> <li>• 지역 내 대외 업무협의 관련 사항</li> </ul>

## 5 위원회의 미션과 비전



## 제2장

## 2025년도 위원회 정책성과

## 1 추진과제 및 주요성과

우리 위원회는 2023년 정립한【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로 국민 행복에 기여】라는 미션 아래【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한 분쟁조정 전문기관】이라는 중장기 비전 실현에 매진해 왔다. 특히 1. 공정과 신속, 2. 소통, 3. 전문성, 4. 혁신의 4대 핵심 가치를 제도 운용의 근간으로 삼아 준사법 독립기구로서 위상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위원회는 2025년도 정책 목표로 ‘국민 편익을 최우선하는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과 ‘조직경쟁력 증진을 위한 전문성 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대내외 토대 구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과제를 각각 선정하였다. 먼저 ‘국민 편익을 최우선하는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의 세부과제로는 ▲국민의 조정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지역민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을 설정하였으며, ‘조직경쟁력 증진을 위한 전문성 강화’의 세부과제로는 ▲미디어 법제 연구기능 확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역량 제고를 발굴하였다. 끝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대내외 토대 구축’의 세부과제로는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입법 추진, ▲직원친화적 업무환경 조성을 설정해 밀도있게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 1. 국민 편익을 최우선하는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1-1] 국민의 조정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 (당사자 편익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업무전환 검토) 온라인 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사무처 내 공감대 형성 및 중장기적 진행 계획 검토
-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전자조정 신청 시 사건번호, 담당 중재부, 조정기일, 처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 완료

## [1-2] 지역민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

- (지역사무소의 효율적 관리) 지역총괄실을 신설하여 지역중재부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민 만족도 개선 노력
- (지역중재부 신설 추진)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중재위원 증원 및 인천 등 지역중재부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문체위 의원실과 지속 소통 및 협조 요청

## 2. 조직경쟁력 증진을 위한 전문성 강화

### [2-1] 미디어 법제 연구기능 확대

- (연구센터의 설립 및 안정적 운영) 연구센터 설치 및 박사인력 채용으로 정기 연구보고서, 현안 보고서 작성하고 국내외 연구학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으로 연구센터 안착 및 운영
- (연구용역을 통한 위원회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으로 3개의 연구용역보고서 생산.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정대상·운영재원과 관련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영할 논리적 근거 및 구체적인 시정권고 개선방안 확보

#### <2025년 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연구
-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현황 분석 및 최적화 방안 연구
-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방안 연구

### [2-2]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역량 제고

- (중재위원의 조정역량 증진) 중재위원 워크숍에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조정사례를 통한 조정기법 등을 중재위원들이 공유·습득함으로써 조정절차에서 전문성 및 대응 역량 강화
- (직원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 조사관 직무교육, 부서별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 및 심의 모니터링 인력 정기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효과 제고

## 3. 지속성장을 위한 대내외 토대 구축

### [3-1]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입법 추진

-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적극 대응) 선거보도 심의기구 통합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및 상설화가 필요함을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강조
- (피해구제의 영역 확대) 추후보도 요건을 비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고, 조정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포섭하는 등의 내용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발의

### [3-2] 직원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강화) 위원회 시스템 기능 개선, 임직원 책임보험 가입, 나라장터 시스템 기반 계약절차 도입 등 근무환경의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
- (위원회 실정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운용) 연구센터 신설·인력공백에 따른 기간제 직원 채용, 임금피크제 운영 예규 개정안 마련, 지역총괄실 신설에 따른 평가·평정 기준표 개편 등 조직의 인적자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 PART

---

---

---

#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 제1장 언론조정

제1절 개요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제4절 평가

## 제2장 시정권고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 제3장 선거기사심의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 제1장

## 언론조정

## 제1절 개요

##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명예 및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조정·중재 제도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로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각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 대상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양 당사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위원회는 조정 및 중재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 및 조화로운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5년부터 매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최근 3년간은 4,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0년 이후로는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전체 사건의 70% 중반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됐는데, 특히 2024년에는 80.9%, 2025년에는 81.3%로 연속 80%를 넘겨 인터넷 기반 미디어 콘텐츠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부터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채널의 뉴스 콘텐츠를 조정 대상 매체에 포함하여 조정신청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유튜브 관련 조정신청 사건을 상시 처리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조정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쇼츠 영상에 고정댓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사가 아닌 자(개인 등)가 제공한 유튜브 등의 뉴스 콘텐츠를 조정 대상 매체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총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부장판사)을 포함하여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 관련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와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 1 청구현황

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4,026건으로 전년 대비 89건(2.3%) 증가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조정 청구현황

(2023. 1. 1. ~ 2025. 12. 31.)

구분 \ 연도	2023	2024	2025
청구 건수	4,085	3,937	4,026

### 2 청구권별 현황

2025년에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은 정정보도청구 1,839건(45.7%), 손해배상청구 1,403건(34.8%), 반론보도청구 690건(17.1%), 추후보도청구 94건(2.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6.5%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손해배상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23. 1. 1.~2025. 12. 31.)

청구명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정정보도		1,943 (47.6)	1,824 (46.3)	1,839 (45.7)
반론보도		731 (17.9)	825 (21.0)	690 (17.1)	2,246 (18.6)
추후보도		99 (2.4)	57 (1.4)	94 (2.3)	250 (2.1)
손해배상		1,312 (32.1)	1,231 (31.3)	1,403 (34.8)	3,946 (32.8)
계		4,085 (100.0)	3,937 (100.0)	4,026 (100.0)	12,048 (100.0)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2,579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451건(11.2%), 방송 331건(8.2%), 신문 311건(7.8%), 뉴스통신 242건(6.0%) 순으로 이어졌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신청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023. 1. 1.~2025. 12. 31.)

매체 유형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신문	일간 신문	388 (9.5)	287 (7.3)	208 (5.2)
주간 신문		99 (2.4)	89 (2.3)	103 (2.6)	291 (2.4)
방송		345 (8.4)	317 (8.1)	331 (8.2)	993 (8.2)

매체 유형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잡지	8 (0.2)	10 (0.3)	6 (0.1)	24 (0.2)
뉴스통신	218 (5.3)	176 (4.5)	242 (6.0)	636 (5.3)
인터넷신문	2,491 (61.0)	2,537 (64.4)	2,579 (64.1)	7,607 (63.1)
인터넷뉴스 서비스	498 (12.2)	473 (12.0)	451 (11.2)	1,422 (11.8)
기타	38 (0.9)	48 (1.2)	106 (2.6)	192 (1.6)
계	4,085 (100.0)	3,937 (100.0)	4,026 (100.0)	12,048 (100.0)

\* ( ) 안의 숫자는 %

\* '기타' 항목에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25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3,857건(95.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사생활 침해 94건(2.3%), 초상권 침해 41건(1.0%), 재산상 손해 31건(0.8%), 성명권 침해 3건(0.1%)의 순이었다.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23. 1. 1. ~ 2025. 12. 31.)

침해 유형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명예훼손	4,042 (98.9)	3,810 (96.8)	3,857 (95.8)	11,709 (97.2)
초상권 침해	21 (0.5)	85 (2.2)	41 (1.0)	147 (1.2)
음성권 침해	1 (0.0)	6 (0.2)		7 (0.1)

침해 유형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성명권 침해	3 (0.1)	3 (0.1)	3 (0.1)	9 (0.1)
사생활 침해	3 (0.1)	1 (0.0)	94 (2.3)	98 (0.8)
재산상 손해	4 (0.1)	4 (0.1)	31 (0.8)	39 (0.3)
기타	11 (0.3)	28 (0.7)		39 (0.3)
계	4,085 (100.0)	3,937 (100.0)	4,026 (100.0)	12,048 (100.0)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신청인 유형별로 2025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 2,253건(5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반단체 759건(18.9%), 기업체 501건(12.4%), 지자체 167건(4.1%), 공공단체 93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비해 일반단체, 지자체, 국가기관의 청구건수는 감소한 반면 개인, 기업체, 공공단체 등의 청구건수는 증가했다.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023. 1. 1. ~ 2025. 12. 31.)

신청인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개인	2,225 (54.5)	2,154 (54.7)	2,253 (56.0)	6,632 (55.0)
국가기관	77 (1.9)	76 (1.9)	51 (1.3)	204 (1.7)
지자체	154 (3.8)	181 (4.6)	167 (4.1)	502 (4.2)
공공단체	101 (2.5)	54 (1.4)	93 (2.3)	248 (2.1)

신청인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일반단체	536 (13.1)	819 (20.8)	759 (18.9)	2,114 (17.5)
종교단체	46 (1.1)	19 (0.5)	72 (1.8)	137 (1.1)
기업체	757 (18.5)	456 (11.6)	501 (12.4)	1,714 (14.2)
언론사	141 (3.5)	47 (1.2)	51 (1.3)	239 (2.0)
교육기관	48 (1.2)	131 (3.3)	79 (2.0)	258 (2.1)
계	4,085 (100.0)	3,937 (100.0)	4,026 (100.0)	12,048 (100.0)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5년 조정사건을 중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4,026건 중 서울중재부(8개)가 2,954건(73.4%), 지역중재부(10개)가 1,072건(26.6%)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 222건(5.5%), 대전중재부 196건(4.9%), 대구중재부 166건(4.1%), 광주중재부 159건(3.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중재부는 매년 서울을 제외한 지역중재부 가운데 월등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중재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천광역시가 경기중재부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에 소재하는 언론사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3. 1. 1. ~ 2025. 12. 31.)

중재부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서울중재부	3,114 (76.2)	2,923 (74.2)	2,954 (73.4)	8,991 (74.6)
부산중재부	23 (0.6)	69 (1.8)	53 (1.3)	145 (1.2)

중재부 \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대구중재부	123 (3.0)	126 (3.2)	166 (4.1)	415 (3.4)
광주중재부	117 (2.9)	111 (2.8)	159 (3.9)	387 (3.2)
대전중재부	67 (1.6)	82 (2.1)	196 (4.9)	345 (2.9)
경기중재부	357 (8.7)	226 (5.7)	222 (5.5)	805 (6.7)
강원중재부	33 (0.8)	38 (1.0)	39 (1.0)	110 (0.9)
충북중재부	82 (2.0)	101 (2.6)	57 (1.4)	240 (2.0)
전북중재부	98 (2.4)	158 (4.0)	68 (1.7)	324 (2.7)
경남중재부	58 (1.4)	61 (1.5)	98 (2.4)	217 (1.8)
제주중재부	13 (0.3)	42 (1.1)	14 (0.3)	69 (0.6)
계	4,085 (100.0)	3,937 (100.0)	4,026 (100.0)	12,048 (100.0)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신청서 접수 경로별로는 이메일이 3,052건(75.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자신청 접수건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2025년에는 884건(22.0%)이었고, 우편 56건(1.4%), 방문 34건(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메일과 전자신청을 통한 온라인 접수 비중이 2023년 96.4%, 2024년 95.2%, 2025년 9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023. 1. 1. ~ 2025. 12. 31.)

연도	구분	방문	우편	전자신청	구술	이메일	계
2023		46	97	1,123	5	2,814	4,085
		(1.1)	(2.4)	(27.5)	(0.1)	(68.9)	(100.0)
2024		115	53	721	22	3,026	3,937
		(2.9)	(1.3)	(18.3)	(0.6)	(76.9)	(100.0)
2025		34	56	884	-	3,052	4,026
		(0.8)	(1.4)	(22.0)		(75.8)	(100.0)

\* ( ) 안의 숫자는 %

##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 1 개요

2025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653건(41.1%), 취하 1,051건(26.1%), 조정불성립결정 870건(21.6%), 기각 298건(7.4%), 각하 72건(1.8%), 직권조정결정 73건(1.8%) 순이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건이 4.2%p, 조정불성립결정된 사건의 비율이 5.1%p 상승한 반면, 피해구제로 취하 처리된 사건은 5.3%p, 직권조정결정된 사건의 사건의 비율은 2.1%p 감소했다. 기각 및 각하 사건은 전년과 비슷하게 9% 가량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3	4,085	1,599	61	34	793	145	113	1,152	188		74.1%
	%	(40.6)	(1.5)	(0.9)	(20.1)	(3.7)	(2.9)	(29.3)	(4.8)		
2024	3,937	1,452	88	66	649	336	38	1,028	280		72.5%
	%	(36.9)	(2.2)	(1.7)	(16.5)	(8.5)	(1.0)	(26.1)	(7.1)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5	4,026	1,653	40	33	870 (19)	298	72	838	213	9	69.9%
	%	(41.1)	(1.0)	(0.8)	(21.6)	(7.4)	(1.8)	(20.8)	(5.3)	(0.2)	

\*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 /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이송)} × 100

## 2 피해구제율 현황

2025년 피해구제율은 69.9%로 전년의 72.5%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조정성립 비율이 소폭 오른 데 비해 조정불성립결정 및 피해를 구제받고 취하한 사건의 비율이 각각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피해구제율은 전체 사건에서 기각, 각하 또는 이송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확정된 사건,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가 구제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23. 1. 1.~2025. 12. 31.)

연도	구분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23		4,085	258	3,827	2,835	74.1%
2024		3,937	374	3,563	2,582	72.5%
2025		4,026	370	3,647	2,550	69.9%

\* 2025. 8. 사건 이송 절차 개편에 따라 2025년 청구요건 적합건수(A-B)에 이송사건 수 제외

### 3 청구권별 처리결과

#### 가. 개요

청구권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조정성립률은 각각 43.6%, 49.4%로 전년과 비교해 대폭 상승하였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조정성립률은 전년에 비해 대폭 낮아졌으나, 조정신청 후 심리가 열리기 전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의 합의에 따라 피해구제로 취하된 비율이 60.6%로 나타나 실제로 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 역시 조정성립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피해구제로 취하된 비율이 상승하여 피해구제를 받은 비율은 궁극적으로는 높아졌다고 분석된다.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2025. 1. 1. ~ 2025.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이송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정정보도	1,839 (100.0)	802 (43.6)	37 (2.0)	424 (23.1)	145 (7.9)	20 (1.1)	316 (17.2)	89 (4.8)	6 (0.3)
반론보도	690 (100.0)	341 (49.4)	15 (2.0)	128 (18.6)	56 (8.1)	4 (0.6)	110 (15.9)	35 (5.1)	1 (0.1)
추후보도	94 (100.0)	6 (6.4)		7 (7.4)	1 (1.1)	4 (4.3)	57 (60.6)	19 (20.2)	
손해배상	1,403 (100.0)	504 (35.9)	21 (1.5)	311 (22.2)	96 (6.8)	44 (3.1)	355 (25.3)	70 (5.0)	2 (0.1)
계	4,026 (100.0)	1,653 (41.1)	71 (1.8)	870 (21.6)	298 (7.4)	72 (1.8)	838 (20.8)	213 (5.3)	9 (0.2)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례 1. 정정보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공무원인 신청인이 근무시간에 ‘폭탄주’를 마셨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연근무제가 적용돼 해당 시간은 퇴근 시간 이후였으므로 근무시간 중 음주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2. 반론보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자체장인 신청인이 특정 지역에 투자목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패널 발언을 방송했다. 신청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으로 실제 거주 이력이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게시된 다시보기 영상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하고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3. 추후보도

피신청인은 해군인 신청인이 배가 고장났다고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무죄 확정 사실을 알리는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사건은 취하하는 것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

#### 사례 4.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법인이 일부 언론에 공지한 행사의 세부 일정과 신청인 소속 구성원들의 성명, 휴대폰번호를 기사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인과 구성원들이 내부 정보와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연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 ① 처리현황

2025년 손해배상청구 1,403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504건(35.9%), 직권조정결정 21건(1.5%), 조정불성립결정 311건(21.0%), 기각 96건(6.8%), 각하 44건(3.1%), 취하 425건(30.3%)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건의 조정성립된 사건의 비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직권조정결정으로 피해구제된 사건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년에 비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각하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4배 정도 증가했다.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23. 1. 1. ~ 2025.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3	1,312 (100.0)	476 (36.3)	15 (1.1)	10[1] (0.8)	270[8] (20.6)	56 (4.3)	59 (4.5)	371 (28.3)	55 (4.2)	
2024	1,231 (100.0)	421 (34.2)	23 (1.9)	20 (1.6)	223[6] (18.1)	131 (10.6)	10 (0.8)	283 (23.0)	120 (9.7)	
2025	1,403 (100.0)	504 (35.9)	12 (0.9)	9 (0.6)	311[8] (21.0)	96 (6.8)	44 (3.1)	355 (25.3)	70 (5.0)	2 (0.1)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손해배상청구 사건 1,403건 중 실제 금전배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은 32건(2.3%)으로 전년도 22건(1.8%)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배상을 포함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의 수정 및 열람차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된 경우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피해구제된 조정사건 수는 879건(62.7%)이다.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중 금전배상 비율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조정건수	비율(%)
2023	1,312	28	2.1
2024	1,231	22	1.8
2025	1,403	32	2.3

## ② 청구액 및 조정액

2025년 손해배상청구 최고액은 90억 원, 최저액은 1원이었으며, 조정 최고액은 2천만 원, 최저액은 30만 원이었다.

2025년 손해배상 조정건수는 전년도 22건에서 32건으로 증가했다. 조정 최저액은 3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았으나, 조정 최고액은 2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배 증가했으며, 평균 조정액 또한 전년도 145만 원에서 205만 9,375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 손해배상 최고 조정액은 2천만 원이었다. 지역번영회와 지역번영회의 대표자가 연명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지역번영회가 광역 철도 조기착공 추진위 활동을 정치적 홍보로만 이용하고 있고, 지역번영회 대표자는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 조정대상기사의 수정과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직권조정결정되었다.

**사례 5. 손해배상 최고 조정액 사례**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과 신청인 단체가 광역 철도 조기착공 추진위 활동을 정치적 홍보로만 이용하고 있고, 신청인 단체 대표자는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신청인 단체 대표자 관련 사건이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을 뿐이며,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피신청인이 반복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있어 신청인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기소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며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중재부는 기사 수정과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권조정결정을 했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23. 1. 1.~2025. 12. 31./ 단위: 원)

연도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3		50	220,000,000,000	8,464,004,574	20,000,000
2024		1	220,000,000,000	620,578,012	20,000,000
2025		1	9,000,000,000	75,415,441	20,000,000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23. 1. 1.~2025. 12. 31./ 단위: 원)

연도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3		300,000	5,000,000	1,660,870	1,000,000
2024		300,000	5,000,000	1,450,000	1,000,000
2025		300,000	20,000,000	2,059,375	1,000,000

**㉓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5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1,254건(89.4%)으로 전년과 유사하게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생활 침해 90건(6.4%), 초상권 침해 30건(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전체 1,254건 중 21건(1.7%)만이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명예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초상권, 사생활 침

해 등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보다 다소 높은 비율인 전체 149건 중 7.4%(11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이를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해구제율(62.7%)과 비교해 분석하면, 실제 조정 절차에서 명예훼손 사건들은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권리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초상권 침해 등의 사건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로는 의료법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에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노출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로는 화물차 관련 불법행위 보도에서 피신청인은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화물차 사진을 게재하였고, 조정대상기사에 언급된 화물차 차주인 신청인은 불법행위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알림보도와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5. 1. 1. ~ 2025. 12. 31./ 단위: 원)

침해 유형 \ 조정액	인용건수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21건	300,000	20,000,000	2,219,048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4건	1,000,000	5,000,000	2,125,000	1,250,000	1,000,000
성명권 침해	1건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재산상 손해	4건	800,000	5,000,000	1,700,000	650,000	500,000
사생활 침해	2건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사례 6.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의 행사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된 사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명예훼손성 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7.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동물학대 사건 보도 중 재연을 위해 촬영한 신청인의 매장 외관을 방영하면서 '재연' 표시를 누락하였고, 신청인은 이로 인해 동물학대 사건과 신청인의 매장이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시청자들이 신청인을 사건 관계자로 오인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인정되어 알림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5. 1. 1. ~ 2025. 12. 31.)

구분 침해 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승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1,254 (100.0)	484 (38.6)	21 (1.7)	297 (23.7)	96 (7.7)	22 (1.8)	267 (21.3)	65 (5.2)	2 (0.2)
초상권 침해	30 (100.0)	11 (36.7)		10 (33.3)		1 (3.3)	3 (10.0)	5 (16.7)	
성명권 침해	3 (100.0)	1 (33.3)		1 (33.3)			1 (33.3)		
사생활 침해	90 (100.0)	3 (3.3)		1 (1.1)		2 (2.2)	84 (93.3)		
재산상 손해	26 (100.0)	5 (19.2)		2 (7.7)		19 (73.1)			
계	1,403 (100.0)	504 (35.9)	21 (1.5)	311 (22.2)	96 (7.7)	44 (3.1)	355 (25.3)	70 (5.0)	2 (0.1)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일간신문(46.2%), 방송(51.4%), 주간신문(54.4%) 등 오프라인 매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한편, 온라인 매체인 인터넷신문(23.8%), 인터넷뉴스서비스(18.8%)는 전년과 유사하게 피해구제로 취하된 사건의 비율이 오프라인 매체보다 다소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뉴스통신의 경우 피해구제로 취하된 사건의 비율(31.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청인들이 온라인 매체 보도에 대해 더욱 신속한 피해구제를 희망하고, 온라인 매체의 피신청인들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등 위원회를 통해 사전에도 활발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25. 1. 1. ~ 2025. 12. 31.)

매체 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승
								구제	미구제	
신문	일간 신문	208 (100.0)	96 (46.2)	3 (1.4)	71 (34.1)	10 (4.8)		15 (7.2)	13 (6.3)	
	주간 신문	103 (100.0)	56 (54.4)	5 (4.9)	22 (21.4)		2 (1.9)	14 (13.6)	4 (3.9)	
방송		331 (100.0)	170 (51.4)	4 (1.2)	90 (27.2)	23 (6.9)	6 (1.8)	21 (6.3)	17 (5.1)	
잡지		6 (100.0)	4 (66.7)		1 (16.7)	1 (16.7)				
뉴스통신		242 (100.0)	91 (37.6)	3 (1.2)	38 (15.7)	22 (9.1)	3 (1.2)	75 (31.0)	10 (4.1)	
인터넷신문		2,579 (100.0)	983 (38.1)	46 (1.8)	523 (20.3)	204 (7.9)	56 (2.2)	615 (23.8)	143 (5.5)	9 (0.3)
인터넷뉴스 서비스		451 (100.0)	209 (46.3)	3 (0.7)	99 (22.0)	31 (6.9)	4 (0.9)	85 (18.8)	20 (4.4)	
기타		106 (100.0)	44 (41.5)	9 (8.5)	26 (24.5)	7 (6.6)	1 (0.9)	13 (12.3)	6 (5.7)	
계		4,026 (100.0)	1,653 (41.1)	73 (1.8)	870 (21.6)	298 (7.4)	72 (1.8)	838 (20.8)	213 (5.3)	9 (0.2)

\* ( ) 안의 숫자는 %

\* '기타' 항목에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지난해 접수된 사건 4,026건 중 대다수가 명예훼손 사건(3,857건, 95.8%)이었다. 이 외에도 사생활 침해 94건(2.3%), 초상권 침해 41건(1.0%), 재산상 손해 31건(0.8%), 성명권 침해 3건(0.1%) 순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인 명예훼손 사건의 전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률은 42.1%(1,625

건)이며, 조정절차 중 피해구제되어 취하된 사건 19.4%(749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은 61.6%(2,3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 외 처리결과로는 조정불성립결정 22.1%(852건) 기각 7.6%(295건), 미구제 취하 5.3%(205건), 직권조정결정 1.9%(73건), 각하 1.3%(49건)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조정불성립결정(22.1%)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로 취하된 사건(19.4%) 비율은 작년(25.8%)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조정 전 당사자 간 사전 합의율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어 기각(7.6%)된 사건의 비율은 전년(8.2%) 대비 감소하였으나, 신청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각하된 사건의 비율(1.3%)은 전년(0.9%)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사생활 침해와 재산상 손해 관련 사건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침해는 2.3%(94건)를 차지해 명예훼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1건) 대비 청구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처리결과 측면에서 조정성립 사건 6.4%(6건), 심리절차 중 취하로 구제된 사건이 89.4%(84건)로 조정 전 당사자 간 사전 합의로 해결된 경우가 다수였다. 재산상 손해는 0.8%(31건)로 전년도 4건에 비해 청구 건이 증가하였다. 이 중 다수의 사건이 조정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61.3%(19건)로 종결되었다.

초상권 침해 사건은 1.0%(41건)로 전년도 2.2%(85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초상권 침해 사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39%(16건), 조정절차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취하 9.8%(4건)로 집계되었는데, 전년도에 조정성립 9.4%(8건)보다 피해구제로 취하된 비율이 42.4%(36건)로 높았던 것에 비해 2025년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5. 1. 1. ~ 2025. 12. 31.)

침해 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3,857 (100.0)	1,625 (42.1)	73 (1.9)	852 (22.1)	295 (7.6)	49 (1.3)	749 (19.4)	205 (5.3)	9 (0.2)
초상권 침해	41 (100.0)	16 (39.0)		12 (29.3)		1 (2.4)	4 (9.8)	8 (19.5)	
성명권 침해	3 (100.0)	1 (33.3)		1 (33.3)			1 (33.3)		
사생활 침해	94 (100.0)	6 (6.4)		1 (1.1)		3 (3.2)	84 (89.4)		

침해 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구제	미구제	
재산상 손해	31 (100.0)	5 (16.1)		4 (12.9)	3 (9.7)	19 (61.3)			
계	4,026 (100.0)	1,653 (41.1)	73 (1.8)	870 (21.6)	298 (7.4)	72 (1.8)	838 (20.8)	213 (5.3)	9 (0.2)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례 8. 명예훼손

피신청인 언론사는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유력 증거를 신청인의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정정보도 및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9. 초상권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소속 직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본인과 무관한 보도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보도 이후 비식별처리 등을 하였고, 심리에서 15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10. 성명권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공익 활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성명이 포함된 고발장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원 노출로 업계 내 평판이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피신청인의 부주의에 대한 유감 표명 및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11. 사생활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연예인과 연예인 소속사의 업무를 대리하는 대행사 대표의 개인 전화번호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를 받는 등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전 피신청인은 기사 열람차단 및 사과문 게재 조치를 하였고 심리 결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심리 전 조치를 유지하고,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2. 재산상 손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러브버그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일 년 전 촬영된 신청인의 가게 영상을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현재 신청인의 음식점에 위생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기사를 열람차단한 상태였고, 심리에서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전체 사건 중 개인이 청구한 비율이 2023년 54.5%, 2024년 54.7%, 2025년 56.0%로 계속해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경우, 개인 청구 사건 2,253건 중 791건(35.1%)이 조정성립되었고, 582건(25.8%)이 열람차단 및 보도기재 등으로 피해구제되어 취하되었으며, 502건(22.3%)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처리 건수는 개인사업자, 기타, 교육자, 정치인 등의 순이었고, 조정성립률은 연예인(75%), 조합대표 및 협회장(57.1%), 정치인(54.8%), 문화예술인(38.3%) 등의 순이었다.

단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지자체(62.3%), 국가기관(60.8%), 일반단체와 교육기관(각 55.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개인)

(2025. 1. 1.~2025. 12. 31.)

신청인 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구제	미구제	
정치인	250 (100.0)	137 (54.8)	6 (2.4)	54 (21.6)	12 (4.8)	6 (2.4)	27 (10.8)	8 (3.2)	
공공기관장	10 (100.0)			8 (80.0)			2 (20.0)		
고위공무원	74 (100.0)	23 (31.1)		28 (37.8)			7 (9.5)	16 (21.6)	
공무원	205 (100.0)	71 (34.6)		60 (29.3)			48 (23.4)	26 (12.7)	

신청인 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이송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전문직 종사자	190 (100.0)	79 (41.6)	4 (2.1)	26 (13.7)	56 (29.5)	2 (1.1)	17 (8.9)	6 (3.2)	
문화예술인	81 (100.0)	31 (38.3)	3 (3.7)	15 (18.5)		2 (2.5)	22 (27.2)	8 (9.9)	
종교인	66 (100.0)	10 (15.2)	2 (3.0)	19 (28.8)			30 (45.5)	5 (7.6)	
회사원	81 (100.0)	29 (35.8)		17 (21.0)			26 (32.1)	7 (8.6)	2 (2.5)
언론인	23 (100.0)	5 (21.7)		10 (43.5)			2 (8.7)	6 (26.1)	
교육자	323 (100.0)	106 (32.8)	3 (0.9)	92 (28.5)	24 (7.4)		93 (28.8)	5 (1.5)	
개인사업가	396 (100.0)	129 (32.6)	5 (1.3)	78 (19.7)	17 (4.3)	7 (1.8)	141 (35.6)	19 (4.8)	
연예인	12 (100.0)	9 (75.0)					3 (25.0)		
학생	90 (100.0)	14 (15.6)		15 (16.7)		3 (3.3)	55 (61.1)	3 (3.3)	
시민활동가	24 (100.0)	6 (25.0)		14 (58.3)	4 (16.7)				
조합대표 및 협회장	42 (100.0)	24 (57.1)	5 (11.9)	10 (23.8)			3 (7.1)		
기타	386 (100.0)	118 (30.6)	6 (1.6)	56 (14.5)	61 (15.8)	30 (7.8)	106 (27.5)	9 (2.3)	
계	2,253 (100.0)	791 (35.1)	34 (1.5)	502 (22.3)	174 (7.7)	50 (2.2)	582 (25.8)	118 (5.2)	2 (0.1)

\* ( ) 안의 숫자는 %

\* 고위공무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함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20.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단체)

(2025. 1. 1. ~ 2025. 12. 31.)

신청인 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승
							구제	미구제	
국가기관	51 (100.0)	31 (60.8)	2 (3.9)	8 (15.7)	2 (3.9)		4 (7.8)	4 (7.8)	
지자체	168 (100.0)	105 (62.3)	2 (1.2)	24 (14.4)	1 (0.6)		24 (14.4)	12 (7.2)	
공공단체	93 (100.0)	33 (35.5)		31 (33.3)			17 (18.3)	10 (10.8)	2 (2.2)
일반단체	759 (100.0)	423 (55.7)	11 (1.4)	115 (15.2)	98 (12.9)	15 (2.0)	68 (9.0)	29 (3.8)	
종교단체	72 (100.0)	26 (36.1)	14 (19.4)	14 (19.4)	1 (1.4)	1 (1.4)	16 (22.2)		
기업체	501 (100.0)	185 (36.9)	8 (1.6)	144 (28.7)	19 (3.8)	6 (1.2)	111 (22.2)	23 (4.6)	5 (1.0)
언론사	51 (100.0)	16 (31.4)		20 (39.2)			7 (13.7)	8 (15.7)	
교육기관	79 (100.0)	44 (55.7)	2 (2.5)	12 (15.2)	3 (3.8)		9 (11.4)	9 (11.4)	
계	1,773 (100.0)	862 (48.6)	39 (2.2)	368 (20.8)	124 (7.0)	22 (1.2)	256 (14.4)	95 (5.4)	7 (0.4)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7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전체 사건의 73.4%(2,954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서울중재부 사건은 2023년 76.2%(3,114건), 2024년 74.2%(2,923건)로 꾸준히 70% 중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중재부의 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41.2%(1,217건), 당사자 간 협이나 화해가 이뤄져 취하로 피해구제된 것이 21.5%(634건), 조정불성립결정 20.6%(60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외 기각 8.0%(235건), 미구제 취하 5.0%(147건), 각하 2.1%(63건), 직권조정결정 1.4%(4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중재부(전체 사건의 26.6%, 1,072건)의 경우 서울중재부와 마찬가지로 조정성립으로 처리된 사건이 40.7%(436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정불성립결정 24.3%(261건), 피해구제된 취하 사건 19.0%(2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 미구제 취하 6.2%(66건), 기각 6.0%(63건), 직권조정결정 3.1%(33건)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중재부별 처리결과

(2025. 1. 1. ~ 2025. 12. 31.)

중재부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송
							구제	미구제	
서울	2,954 (100.0)	1,217 (41.2)	40 (1.4)	609 (20.6)	235 (8.0)	63 (2.1)	634 (21.5)	147 (5.0)	9 (0.3)
부산	53 (100.0)	24 (45.3)	3 (5.7)		2 (3.8)	1 (1.9)	21 (39.6)	2 (3.8)	
대구	166 (100.0)	77 (46.4)	6 (3.6)	46 (27.7)		2 (1.2)	29 (17.5)	6 (3.6)	
광주	159 (100.0)	127 (79.9)	9 (5.7)	8 (5.0)	2 (1.3)	5 (3.1)	7 (4.4)	1 (0.6)	
대전	196 (100.0)	51 (26.0)		71 (36.2)	27 (13.8)		23 (11.7)	24 (12.2)	
경기	222 (100.0)	68 (30.6)		61 (27.5)	10 (4.5)		74 (33.3)	9 (4.1)	
강원	39 (100.0)	6 (15.4)	4 (10.3)	8 (20.5)	2 (5.1)	1 (2.6)	18 (46.2)		
충북	57 (100.0)	9 (15.8)	8 (14.0)	14 (24.6)	16 (28.1)		10 (17.5)		
전북	68 (100.0)	24 (35.3)	3 (4.4)	37 (54.4)	2 (2.9)			2 (2.9)	
경남	98 (100.0)	40 (40.8)		14 (14.3)	2 (2.0)		20 (20.4)	22 (22.4)	
제주	14 (100.0)	10 (71.4)		2 (14.3)			2 (14.3)		
계	4,026 (100.0)	1,653 (41.1)	73 (1.8)	870 (21.6)	298 (7.4)	72 (1.8)	838 (20.8)	213 (5.3)	9 (0.2)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8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로 뉴스 이용자의 뉴스 소비 형태 또한 기성 신문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접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SNS와 동영상 플랫폼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생산·유통되는 뉴스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상 조정 대상 매체 범위의 한계로 동영상 플랫폼 기반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한계 속에서도 피해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2022년 '조정 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대상을 좀 더 넓게 포섭하려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콘텐츠가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25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유튜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법제화 방안을 청취하였는바, 이로써 변화된 뉴스 소비 구조 속에서 유튜브 기반 콘텐츠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한편 위원회가 언론조정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개인 유튜버·일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신청인의 91.5%, 피신청인의 83.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양 당사자 모두 80%가 넘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특히 피신청인의 찬성률이 전년도 대비 10% 가까이 올라서 언론사들의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방송사가 보도 영상을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도 전재하는 것 외에 동영상 플랫폼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는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위원회에 접수된 4,026건 중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신청이 287건(7.13%) 있었고, 이 중 원보도를 매개한 건이 244건, 자체 제작한 건이 43건이었다. 2024년 대비 동영상 플랫폼 대상 신청 건이 21건 증가하였으며, 자체 제작 보도에 대한 신청이 2023년 28건, 2024년 33건, 2025년 4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원보도 매개 외에 자체 제작 뉴스 콘텐츠로 인한 인격권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해당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분쟁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다변화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피해에 대해 좀 더 효과적이고 유연한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뉴스 플랫폼에 대한 조정사례를 축적·관리하여 향후 이들을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사례 13.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①**

피신청인 언론사에서 모 원장이 운영하던 병원이 원장 사망 후 일방적으로 폐업해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원장의 유족들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반론보도문을 유튜브 동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추가하면서 병원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영상 제목을 수정하고, 타 영상들과 내용은 중복되면서 제목이 자극적으로 쓰인 쇼츠 영상은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사례 14.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②**

피신청인 언론사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 유명인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는데, 유명인의 옆에 나란히 걸어서 나오던 신청인이 언론사 및 해당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신청인이 나온 기사 및 유튜브 동영상 중 쇼츠를 포함한 2개 유튜브 동영상의 블러 처리가 미흡하다고 인정되어 언론사에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 신청인이 나온 부분을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제4절 평가

2025년 위원회는 총 4,026건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전년 3,937건과 비교하면 사건 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피해구제율은 69.9%를 기록하였다. 한편,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 79.9점, 피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 78.0점으로 전년 대비 신청인 0.2점, 피신청인 0.1점이 각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피신청인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심리 전후 절차 안내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심리 전 절차 안내에 대한 만족도가 83.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당사자들의 조정절차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는 3년 연속하여 4천 건 내외를 기록하였는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수가 많을뿐더러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특성상 유사한 보도가 다수 매체로 확산하는 일이 빈번하여 동일 신청인이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다량 신청 사건이 접수될 경우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자 각 중재부에서는 대표 사건을 심도 있게 심리하여 그 처리결과를 다른 사건 처리에도 참고토록 하거나 쟁점이 동일한 경우 당사자의 양해를 구해 같은 시간대에 병행 심리를 개최하는 등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조정신청 사건 수가 이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중재부가 추가로 증설되지 않아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 21.5일이었던 조정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에는 25.7일로 늘어났고,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28.7일로 파악되어 처리기간의 증가 추세가 확인됐다. 사건 수 증가 외에 당사자의 심리 불출석으로 인한 기일 속행, 송달 불능 및 거부, 심리 전 취하 기피 경향 등 다

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언론중재법은 법정처리기한을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중재부가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14일 이내에 조정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당사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재부 증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위원회는 유튜브 등 뉴스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년 소위원회에서 실무 기준을 정비하고 조정 대상 확대 입법을 위해 조정사례를 축적, 관리해오고 있다. 유튜브 영상 설명란이나 최상단 고정댓글로 보도문을 게재하는 방식 외에도 일부 영상 수정, 자막 추가나 모자이크 처리 강화 등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피해구제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6년에도 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피해구제범위 확장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중재위원 증원 및 중재부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개정을 대비한 실무 논의 및 내실을 다진 자료 축적에 힘쓰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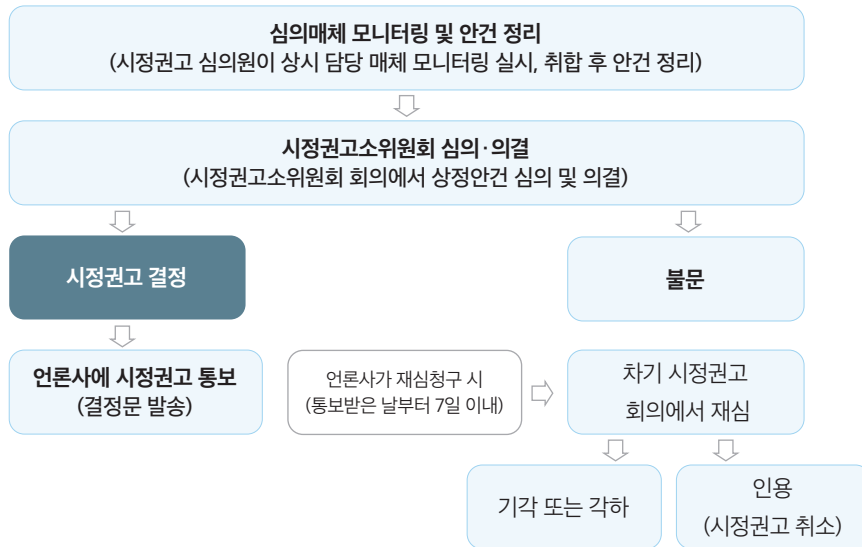
## 제2장

## 시정권고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두고, 신문·잡지·인터넷신문·뉴스통신·방송 등의 언론 보도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지를 심의·의결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 시정권고 절차흐름도



심의의 결과로 법익 침해가 확인되면, 수정 혹은 삭제가 불가능한 지면 매체에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인터넷 매체에는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비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시정권고 대상 매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①법

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시사성 기사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법익 침해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범위 및 정도(매체 인지도, 포털검색 제휴여부 등), ③정기적 발행 여부 및 기사 제공 빈도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반기별로 매체의 심의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로 이행을 강제하지 않으며, 위원회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법익 침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시정권고 현황

2025년 위원회는 상반기 2,714개, 하반기 2,655개 매체를 상시 모니터링하였고, 455개 매체를 대상으로 1,049건의 시정을 권고했다. 시정권고의 내용은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으며, 각 회의 의결 현황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025년에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 중 동일 법익을 3회 이상 침해한 매체는 상반기 12개, 하반기 16개였다. 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반복 침해된 심의기준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안내했으며,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 2 침해 유형별 분석

2025년 시정권고 현황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 금지'가 240건(22.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살 보도' 239건(22.8%)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사생활 보호 등' 182건(17.3%), '기사형 광고' 135건(12.9%), '범죄 사건 보도' 50건(4.8%), '신고자 등 보호' 50건(4.8%)도 주요한 항목으로 집계됐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상위 5개 침해 유형은 2024년과 거의 일치하나, 2025년에는 '신고자 등 보호'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침해 유형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표 22.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3. 1. 1. ~ 2025. 12. 31.)

침해 유형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보호 등	명예 훼손 금지	범죄 사건 보도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신고자 등 보호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범죄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여론 조사 보도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연도	계																			
2023	1,158 (100)	270 (23.3)		45 (3.9)		54 (4.7)		286 (24.7)		27 (2.3)	9 (0.8)	208 (18.0)	35 (3.0)	1 (0.1)	78 (6.7)		126 (10.9)	19 (1.6)		
2024	942 (100)	131 (13.9)		62 (6.6)	1 (0.1)	8 (0.8)	47 (5.0)	241 (25.6)		7 (0.7)	4 (0.4)	226 (24)	4 (0.4)		17 (1.8)		161 (17.1)	33 (3.5)		
2025	1,049 (100)	182 (17.3)	27 (2.6)	50 (4.8)		1 (0.1)	50 (4.8)	2 (0.2)	240 (22.9)	19 (1.8)	30 (2.9)	239 (22.8)	1 (0.1)	16 (1.5)	19 (1.8)		135 (12.9)	38 (3.6)		

\* ( ) 안의 숫자는 %

\* 상기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로, 각 항목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가. 사생활 보호 등

2025년 한 해 동안 ‘사생활 보호 등’ 조항이 적용된 시정권고는 총 182건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며 사인(私人)의 초상, 성명, 사생활, 통신 내역 등을 과도하게 공표한 보도, 유명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을 보도하며 사인(私人)인 가족의 초상 혹은 성명을 공표한 보도, 공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사퇴 압박으로 거취를 고심하던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해 보도하면서, 당사자가 머무르는 자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주거지 내부를 원거리에서 촬영한 점을 감안할 때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또 당사자가 고위공직자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공적 인물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내밀한 사적 영역은 존재하는바, 주거지 내 구체적 사생활 현장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례 1. 사생활 보호 등

사회 : 검찰 · 법원

### 하루 종일 '자택 칩거' 노만석 포착 됐다... 고뇌하는 모습 담겨

중앙일보 | 입력 2025.11.12 05:11 업데이트 2025.11.12 09:57

지면보기 ①

김성진 기자 김보름 기자

구독

- 사퇴 압박으로 거취를 고심하던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해 보도하면서, 당사자가 머무르는 자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공표
-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사 본문 제외

## 나. 범죄사건 보도

2025년 '범죄사건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는 총 50건으로, 전체의 4.8%이다. 위원회는 언론이 법률에 따라 신상공개 결정이 되지 않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을 공표한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가족 간 총격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구체적 신상을 보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유명 업체명을 공표하여 주위 사람들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비록 해당 보도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범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게 하는 정보가 사안 자체에 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지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사례 2. 범죄사건 보도

전체 > 사회 **사건/사고**

### [단독] 인천 총격 사건 피해자, [ ] 대표 일가족이었다

류근원기자 | 입력 2025.07.21 22:22 댓글 1

- 가족 간 총격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업장 이름)를 공표
-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사 본문 및 관련 내용 제외

## 다. 차별금지

2025년 '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는 총 240건으로, 전체의 22.9%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제목에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눈먼 돈', '질름발이', '빙어리 냉가슴'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개저씨', '된장녀', '딸배' 등의 성별 혹은 집단 차별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경우, 부정적인 상황을 보도하며 '중국인 줄 알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나 국적을 차별적으로 묘사한 경우 등이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비록 해당 표현들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례 3. 차별 금지

#### "중국인 줄 알았다"... 상의 탈의한 채 음식 포장하는 중국집 사장님

김다솜 기자 4,315 2025.08.31 | 11:22:13



- 부정적인 상황을 보도하며 '중국인 줄 알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 국적을 차별적으로 묘사

## 라. 자살 보도

2025년 '자살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는 총 239건으로, 전체의 22.8%이다. 위원회는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보도,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표현을 공표한 보도 등에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자살 소식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초상을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소방관 실종 당시 소재를 파악하려고 가족이 당사자의 초상을 공표했다 하더라도, 해당 공표를 발견 후의 언론 공표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이 보도가 공익적 논의를 촉발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련 논의 자체가 아닌 사인(私人)의 초상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사례 4. 자살 보도

실시간 정치 국제 경제 금융 산업 IT·바이오 사회 수도권 지방 문화 스포츠 연예 N컷 광장 포토 TV뉴스스 재류 콘텐츠

###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타살 혐의점 없어...사건 종결 예정

등록 2025.08.21 11:44:31 | 수정 2025.08.21 15:34:23

가 가

#### 검안 결과 극단 선택 추정 흔적도 나와

-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자살 소식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초상을 공표
-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사 본문 제외

## 마. 재난 보도

2025년 '재난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는 총 19건으로, 전체의 1.8%이다. 19건 모두 무안 항공기 사고 관련 보도로, 탑승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공표한 사례와 항공기 충돌 장면이 담긴 영상을 멈춤 처리 등의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보도한 사례가 시정을 권고받았다.

위원회는 탑승자 명단이 있는 해당 사고의 경우 사상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재난 상황과 달리 실명을 공표할 만큼 보도 긴급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탑승자 명단을 공개해 둔 기사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항공기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원본 그대로 보도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고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보도 관행을 넘어 참사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한 보도라고 판단했고,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사례 5. 재난 보도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문화 기획 스포츠 여순항쟁 산단 오피니언 사람 포토 영상 카메라 고발

홈 > 뉴스 > 사회

### 무안 여객기 참사 사망자 120명 집계... 사망자 명단 공개

A 조승화 기자 | 입력 2024.12.29 17:27 | 댓글 0

가 가



가족단위 탑승객 많아...연말 해외여행 다녀오다 참변 정부 중대본 가동... 최상목 대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 무안 항공기 탑승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공표
-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사 본문 제외

### 3 매체 유형별 분석

2025년 시정권고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이 931건(88.8%)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고, 일간지와 뉴스통신은 각각 67건(6.3%), 48건(4.6%)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의 추세를 집계해 보면,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의 비율이 꾸준히 90%를 상회하고 있고, 인쇄 매체는 계속해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기반 매체 보도의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인터넷 기반 매체의 보도는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법의 침해의 영향이 커질 특성이 있으나, 동시에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 비식별 처리 등의 사후 조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성도 있다.

이에 위원회는 법의 침해가 확인된 경우 인터넷 기반 매체에 비식별 처리, 기사 수정, 삭제 등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안내하며,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보도의 공유나 재확산이 차단되어 법의 침해의 확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매체에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권고 이후 언론사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사례별로 정리한 안내문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법의 침해가 인터넷을 매개로 장기간 지속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표 23. 시정권고 수용 사례 안내문 일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사실] 글로컬 대학 지원금 3조원은 혈세, <b>‘눈먼 돈’</b> 대신 안 돼	[사실] 글로컬 대학 지원금 3조원은 혈세, <b>‘애먼 돈’</b> 대신 안 돼
“푸틴, 바그너 반란 당시 <b>결정 장애</b> … 경고받고도 진압 지시 안해”	“푸틴, 바그너 반란 당시 <b>우유부단</b> … 경고 받고도 진압지시 안해”
“뭘 먹을래?” “글쎄…” <b>결정 장애</b> 가 우울증 전조증상?	“뭘 먹을래?” “글쎄…” <b>결정에 어려움</b> 느끼는 게 우울증 전조증상?
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b>꿀 먹은 병어리</b> 인가	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b>묵묵부답</b> 인가

### 4 법의 침해 반복 언론사에 대한 조치

2025년에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상위 5개 매체는 모두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 신문, 뉴스통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매체는 2025년에 시정권고를 받은 전체 매체인 455개 매체의 1% 가량에 불과하지만, 전체 권고 건수의 약 8.9%건(93건)을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위원회는 법의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에 반기별로 시정권고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언론사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표 2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3. 1. 1. ~ 2025. 12. 31.)

구분 연도	총계	매체 유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23	1,158 (100)	29 (2.5)	54 (4.7)	5 (0.4)		63 (5.4)	1,007 (87)	
2024	942 (100)	29 (3.1)	54 (5.7)	2 (0.2)		63 (6.7)	794 (84.3)	
2025	1,049 (100)	33 (3.1)	34 (3.2)	2 (0.2)	1 (0.1)	48 (4.6)	931 (88.8)	

### 제3절 평가

2025년 위원회는 총 1,049건의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 가운데 인터넷 신문과 뉴스통신 등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권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의 시정권고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위원회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익 침해가 발생한 원보도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확산하는 파생 기사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터넷을 매개로 추가 확산되는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언론사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한 법익 침해를 반복하는 매체에 관련 현황을 송부하고, 2026년에는 언론사에 반기별로 발송하는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 등 보도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언론의 법익 침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편 2025년 ‘차별 금지’와 ‘자살 보도’ 항목의 침해 유형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위원회가 2024년 이후 차별적 표현과 모방 자살 등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 국적, 성별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과 자살을 미화·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 관련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며, 이와 함께 ‘사생활 보호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영역, 신상공개 결정이 되지 않은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표하거나 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한 범죄 사건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에는 연 4회의 시정권고 심의원 교육을 실시하여 심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유관 기관의 심의 기준 및 관련 사례를 학습하며 주요 심의 기준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등 심의에 필요한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도 심의 환경 변화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정례화하고, 쟁점 사례 중심의 토론형 교육과 전문 분야별 심화 교육을 확대하여 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에는 심의기준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기존 심의기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수행하고, 수용자 인식 조사 및 유사 자율규제기구의 심의기준 비교 등으로 시정권고 심의 기준 개정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심의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법제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첩된 기준을 일원화하고,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문언을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 제기되는 판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가 단순한 사후적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이 자율적으로 법익 침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공적 안전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제3장

## 선거기사심의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 내지 게재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등)의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심의 유형은 자체심의,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자체심의'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상 기사들을 모니터링하고 이 중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가 있을 경우 선심위가 해당 선거기사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의미한다.

'시정요구심의'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해당 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 요청을 받아들여 선심위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는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당사자는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 게재일 부터 30일 이내)에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인과 언론사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나 언론사가 이를 선심위에 회부하여 진행하는 심의를 말한다.

선심위는 자체심의와 시정요구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재조치가 결정된 언론사에 선심위 결정 사항의 이행을 명한다. 반면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는 선심위가 당사자에게 직접 그 결과를 통보한다.

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를 설치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시선으로 안건들을 심의하였다. 참고로 202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진행되지 않아 선심위를 설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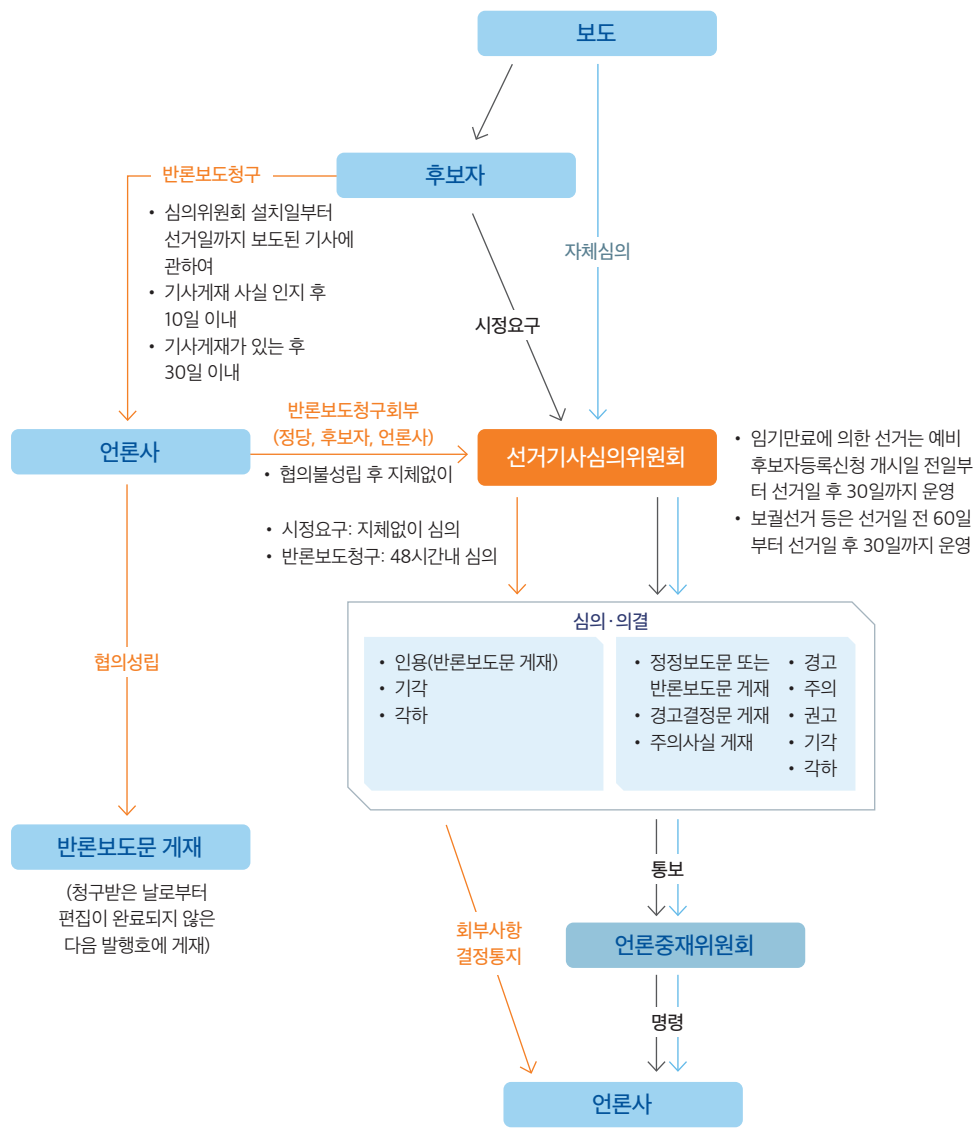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실시됨에 따라 예산 및 인력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작성된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해 최초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등 변화된 보도 환경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위원회 기본규칙, 선심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단체 선정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여 심의위원 추천단체 선정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선심위 구성의 투명성을 높

였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심위 운영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심의·의결 흐름도

**심의·의결 흐름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는 자체심의,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가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 흐름도를 참고



**< 불이행시 >**  
 ※ 처벌조항: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결정사항 불이행 시 「공직선거법」(제25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재심청구 >**  
 •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재심 청구는 1회로 제한됨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 가. 설치·운영

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2025년 4월 2일 실시됨에 따라 2025년 2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표 25.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박홍래	(현)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박혁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준형	(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전무	더불어민주당
	한기천	(현)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국민의힘
	박영흠	(현)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김민호	(현)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성기철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경영전략실장	한국신문협회
	정희옥	(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혜진	(현) 정혜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는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상기 심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겸직함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

기초단체장	5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광역의원	8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 제2선거구, 경기 성남시 제6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4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2선거구, 경북 성주군, 경남 창원시 제12선거구
기초의원	9	서울 중랑구 다선거구, 서울 마포구 사선거구, 서울 동작구 나선거구, 인천 강화군 가선거구, 전남 광양시 다선거구, 전남 담양군 라선거구, 전남 고흥군 나선거구, 경북 고령군 나선거구, 경남 양산시 마선거구
교육감	1	부산광역시

나. 심의의결현황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226개(중앙일간지 30개, 지역일간지 96개, 기타일간지 5개, 중앙주간지 28개, 지역주간지 46개, 중앙월간지 8개, 뉴스통신 13개)의 신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였다.

선심위는 자체심의 9건을 의결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의사실 게재 1건(11.1%), 경고 5건(55.6%), 주의 3건(33.3%)의 결정을 내렸다.

9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보도유형별로는 후보자의 홍보물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동정, 주요 공약 등을 부각 보도한 일반 선거기사가 6건(66.7%)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후보자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인터뷰 보도 2건(22.2%),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 1건(11.1%)도 있었다. 매체유형별로는 뉴스통신이 4건(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주간지와 지역주간지가 각 2건(22.2%), 지역일간지가 1건(11.1%)이었다.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시정요구심이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제도 없었다.

표 26.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 자체심의

(2025. 2. 1.~2025. 5. 2.)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지역 일간지	1 (11.1)	1			1							1			
중앙 주간지	2 (22.2)	2				2						1	1		
지역 주간지	2 (22.2)	2			1			1				2			
뉴스 통신	4 (44.4)	4			4						1	1	2		
계	9 (100)	9 (100)			6 (66.7)	2 (22.2)		1 (11.1)			1 (11.1)	5 (55.6)	3 (33.3)		

사례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사실 게재)



-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출마 소식과 기자회견, 홍보 이미지 등을 여러 차례 부각 보도했으나, 타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거의 다루지 않아 선거기사의 후보자 간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함

**사례 2.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



- 특정 예비 후보자의 동향과 공약 등을 담은 특집 기획 기사를 여러 사진과 함께 실어 부각하여 보도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를 결정함

**사례 3.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

**조덕호 아산시장 예비후보, 26일 개소식 열어..."아산에 새미래 가져올 것"**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

송고 일시 : 2025-02-26 21:45



조덕호 아산시장 예비후보, 26일 개소식(사진제공=조덕호 예비후보)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조덕호 새미래민주당 아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가 26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아산시 범영로 136(아고 오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새미래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일동과 함께 성황리에 개소식을 마쳤다.

조덕호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아산을 찾는 관광객 600만명 유치> 아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23년 395만명 2024년 442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아산시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600만명이 아산을 찾을 수 있도록 아산시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정 예비 후보자의 연설문 등 후보자와 관련한 홍보자료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 후보자 및 여타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주의를 결정함

## 2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 가. 설치·운영

위원회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2025년 4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3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2027년 3월 3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2025. 4. 4. 선고 2024헌나8)에 따라 2025년 6월 3일에 조기 실시되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하여 기존에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해 구성된 선심위 심의위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심의위원을 겸직하게 되었다.

### 나. 심의·의결현황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총 420개(중앙일간지 31개, 지역일간지 129개, 기타일간지 5개, 중앙주간지 26개, 지역주간지 206개, 중앙월간지 8개, 지역월간지 2개, 뉴스통신 13개)의 신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였다.

선심위는 자체심의 26건을 의결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고결정문 게재 3건(11.5%), 경고 6건(23.1%), 주의 15건(57.7%), 권고 1건(3.8%), 안내문 송부 1건(3.8%)의 결정을 내렸다.

위반유형별로 보게 되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2건(84.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4건(15.4%)이었다. 보도유형별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17건(6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뒤로는 내용 및 편집에서 특정 후보자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부각하거나 편향적으로 보도한 일반선거기사가 4건(15.4%)이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 3건(11.5%),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보도 1건(3.8%),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는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가 1건(3.8%) 순이었다. 매체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16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간지 9건(34.6%), 뉴스통신 1건(3.9%) 순이었다.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시정요구심이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도 없었다.

**표 27.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 자체심의

(2025. 4. 14. ~ 2025. 7. 3.)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중앙 일간지	9 (34.6)	9					1		8			4	4	1	
지역 일간지	16 (61.5)	12	4		3	1		3	9	2		2	11		1
뉴스 통신	1 (3.9)	1			1					1					
계	26 (100)	22 (84.6)	4 (15.4)		4 (15.4)	1 (3.8)	1 (3.8)	3 (11.5)	17 (65.4)	3 (11.5)		6 (23.1)	15 (57.7)	1 (3.8)	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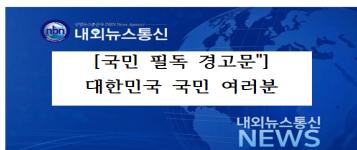
**사례 1.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경고결정문 게재)**

HOME > 정치 > 정치일반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A 편집국 | © 승인 2025.04.27 10:55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이유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를 바탕으로 이재명의 본심과 국정운영 철학을 분석한 결과, 그는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임이 명백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이재명의 발언과 그 위험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경제]**

대기업에 리코번 적용해 재산 몰수 추진

법인세 인상, 재벌 해체 선언

지역화폐 의무화, 환전 추가 건설 반대

우역차 상황에서도 정부 비판만 반복

▶ 평가: 반기업 반시장적 상황, 산업 기반 붕괴 위험.

**[2. 복지]**

전국민 기본소득, 토지배당 주장

데이터세, AI세, 국토보유세 도입 검토

내외뉴스통신

HOME > 정치 > 정치일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A 편집국 | © 승인 2025.06.04 17:13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본 뉴스통신은 제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성명서 등 홍보 자료를 그대로 게재(2025년 4월 27일 자 정치면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등 7건)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2025년 5월 16일 자 오미나연면 『[이영직박사 칼럼] 이남이 밥 먹어준다』)하여 공화선거법 제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호(공정성 및 형평성) 제 1항제1호 및 제 2호(일반 선거기사) 제 2호, 제11호(특정기회 기사, 칼럼 및 기고 등) 제 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nbnews1@naver.com

편집국 nbnews1@naver.com

저작권 © 내외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정 예비 후보자의 연설문 등 후보자와 관련한 후보자료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 후보자 및 여타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주의를 결정함



사례 4.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

東亞日報 2023년 04월 11일 19:00 (수요일)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  
홍준표 글

홍준표가 꿈꾸고,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 책에는 홍준표의 30년 정치 역정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가 꿈꾸고,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선진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정책, 철학, 비전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시크로드 출판사  
출판일: 2023년 04월 11일  
판: 18,000원  
세금: 별도  
주문번호: 010-950-6333

東亞日報 2023년 04월 11일 19:00 (수요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한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효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령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차) 인천광역시청(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안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73)  
06-29-15-8000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경고를 결정함

사례 5.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주의)

2023년 04월 19일 19:00 (금요일)

열린경북신문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홍준표'

여론조사 맞보기

한동훈 > 김문수 > 안철수  
'반드시' 적극 투표층 82%

국민의힘이 오는 22일까지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선을 통해 4명의 2차 진출자를 선출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국민의힘 지명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기록할 결과가 나왔다.

17일 엠브레인퍼블릭·에이스넷리서치·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홍준표 후보라는 응답이 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후보 8%, 김문수 후보 9%, 안철수 후보 8%로, 4위권은 전일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 3%, 윤상현 의

원 1%, 그 외 다른 사람 3%로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없다'는 48%, '모름/무응답'은 7%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55%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대별로 홍 후보는 청년세대인 18~29세에서 23%로 타 후보를 앞섰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가 각 14%, 19%로 가장 높았다.

30대에서는 홍 후보(17%)와 안 후보(16%)가 엇비슷했다. 40대에서는 한 후보와 안 후보가 9%로 같았다.

지역별 비율(13%), 인연·경기(10%)에서는 홍 후보가 선두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17%)에서는 한 후보가, 광주·전라(10%)에서는 안 후보가 우세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홍 후보와 김 후보가 19%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16%)과 강원·제주(16%)에서는 홍 후보가 가장 높았다.

지지 정당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준표와 김문수가 23%의 지지를 받으며,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어 3위 한동훈 19%, 4위 나경원 6%, 5위 안철수 4%로 순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인 '없음/모름/무응답'에서는 홍준표·한동훈 7%, 김문수 5%, 안철수 3%, 나경원 2%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 보수층에서는 홍준표가 2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가 20%로 2위를 차지했고, 3위 한동훈 12%, 4위 나경원 6%, 5위 안철수 5%였다.

중도층의 경우 한동훈이 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안철수 10%, 홍준표 8%, 김문수 5%, 나경원 2%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조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이 82%로 나타났다.

이러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은 12%였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투표층(연령 + 별도)은 6%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374)의 92%, 국민의힘 지지층(n=302)의 8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정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3.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태기자  
(23.04.14.11pm)

- 예비후보자들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기사 제목과 본문에 이를 명기하지 않고 예비후보자가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주의를 결정함

## 다. AI를 활용하여 작성된 기사에 최초로 제재 결정

최근 생성형 AI를 일반 대중도 손쉽게 활용하게 되면서 언론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작성된 기사가 다수 보도되고 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AI를 활용하여 산출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보도한 기사들에 대해 최초로 제재 결정을 함으로써 변화된 언론 환경에 맞추어 실효적인 심의를 실시하였다.

사례 6. 기사는 후보자들의 AI 공약과 관련하여 시가 각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도하였다. 선심위는 AI를 활용하여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평가지표나 기준,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및 순위·등급을 정하였다는 점, AI 답변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점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직 후보자들 공약의 비교 평가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준칙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의 결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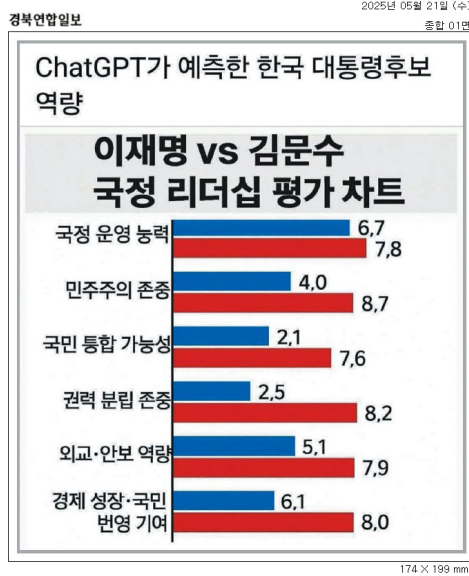
선심위는 차후 AI 활용 보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AI의 발전 속도에 따라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향후 선심위가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좀 더 실효성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사례 6.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주의)



- 후보자들의 AI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점수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였으며,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주의를 결정한

사례 7.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경고결정문 게재)



- 후보자들의 리더십, 외교 및 안보역량, 경제 성장 기여 등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요소를 비교 평가하면서 평가 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경고결정문 게재를 결정함

**3** 관련 규정 정비 및 신설로 선심위 구성의 투명성 제고

위원회는 선심위 구성과 관련하여 ‘추천단체 의결’에 관한 사항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심위 위원의 위촉 절차 전반에 대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명확한 선심위 위원 추천단체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단체 선정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기존 규정에서 ‘추천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복수의 추천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추천단체가 추천하지 않았을 때는 차순위 추천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도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선심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당사자들이 선심위 결정에 좀 더 공정성과 신뢰성을 체감하도록 했다.

## 4 선거기사심의제도 관련 시의성 강화 및 유관 기관과 정책 대응

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각종 사례를 유관 기관과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한국언론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도 평가: 정치 양극화 시대 제21대 대통령선거 인터넷 선거보도 현황과 선거보도 신뢰 회복 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해당 세미나에서 위원회는 오픈소스 생성형 LLM(대규모 언어모델)의 선거보도 심의 실무 활용 가능성 여부를 비롯하여 선심위 활동 중 있었던 '시를 활용하여 작성된 기사'에 대한 제재 사례를 참석자들과 공유하였으며, 반론보도청구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도 문제의식을 전달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도 평가> 공동 세미나 참석 모습



위원회 선심위와 유관 기관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도 간담을 진행하여 원활한 실무 협력 기반을 다졌으며 차후 선심위 운영에서도 심의 현황을 신속히 공유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 제3절 평가

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비롯하여 탄핵 정국 등으로 예정보다 이르게 실시되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두 선거의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로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음에도 위원회는 기설치된 2025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선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건을 충실히 의결하였다.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9건을 의결했는데, 9건 모두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내용으로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선심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국민 여론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진행됐던 만큼 선심위는 매체별 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주도면밀하게 심의하였다. 실제로 총 26건의 안건 심의 중 22건(84.6%)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에 따른 제재 결정이었는데, 특이점으로는 보도유형 중 일반선거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건(15.4%)으로 미미하고 의견광고 또는 상업광고에 따른 의결 사례가 17건(65.4%)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비단 기사 형태의 보도문뿐만 아니라 광고 게재에서도 언론사들에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선심위는 그 특성상 선거가 있을 때 선거일 전후로 설치 및 운영되기 때문에 안건을 심의하는 절차 자체는 기존 여타 선심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했으나, 이번에는 새로운 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추어 시를 활용한 불공정 선거기사 제재 사례를 남기거나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차후 선심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규정 정비로 선심위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향후 구성되는 선심위 자체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전국단위 선거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해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선거인 만큼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수도 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의 사례처럼 신유형의 선거기사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좀 더 효율적이고 기민한 선심위 설치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선거기사심의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실시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선거기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심위 제도 및 활동에 대한 홍보를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강화하고, 선심위가 아닌 일반 조정상담 부서에 선거기사 관련 문의를 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응대 절차를 정리한 상담 매뉴얼을 상담부서와 지역사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 PART

---

---

#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 제1장 언론피해 상담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실적
- 제3절 평가

## 제2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제3절 평가

##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제3절 평가

##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조사결과
- 제3절 평가

## 제5장 홍보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제3절 평가

## 제6장 기타 주요활동

- 사무처 업무환경 및 업무절차 개선
- 임직원 교육유형 내실화
- 전산 시스템 효율성·보안성 향상

## 제1장

## 언론피해 상담

## 제1절 개요

위원회 상담업무는 언론보도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가장 먼저 하는 일로 분쟁해결의 첫 창구이다.

전화, 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제출되는 문의 및 조정신청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조정·중재절차를 통한 구제 방법과 절차적 요건 등 조정·중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위원회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절차 또는 해당 타 기관 관련 정보 등 맞춤 안내로 언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상담은 총 3,865건으로, 전년 4,133건 대비 26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상담 건수가 감소했다기보다 2025년부터 상담 건수 집계 기준이 되는 상담서를 '상담 횟수'가 아닌 '상담 사안'별로 작성하기로 그 기준을 정립하여 동일한 상담신청인의 반복적인 상담을 개별건으로 집계하지 않게 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상담을 이용한 경로, 상담처리 결과, 상담이 집중되는 매체유형 및 구제수단의 비율 등 전반적인 추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전화·방문 등을 통한 대인 방식의 상담 비중이 감소한 반면, 홈페이지 1:1 문의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상담이 증가 일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문 및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피해회복 방법을 문의하는 비중보다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포털, 방송사 홈페이지 등)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에 대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피해회복 방법을 문의한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언론보도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주요 실적

### 1 상담경로

위원회 상담은 전화 상담이 2,086건(54.0%)으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여 여전히 핵심 채널로 기능하고 있으나,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이메일 상담은 975건(25.2%)으로 전년 대비 586건 증가하였고, 국민신문고 577건(14.9%), 인터넷 게시판 129건(3.3%)이 그 뒤를 이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상담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방문 83건(2.2%), 우편 15건(0.4%)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담경로가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화나 방문 상담 등 대면 상담의 경우 이용 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제한되는 반면, 이메일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은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고 심리적 부담이 낮으며, 상담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추후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28. 최근 3년간 상담경로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상담 건수	상담경로					
		전화	방문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국민 신문고	기타
2023	3,995 (100)	3,272 (81.9)	104 (2.6)	34 (0.9)	149 (3.7)	421 (10.5)	15 (0.4)
2024	4,133 (100)	2,757 (66.7)	127 (3.1)	68 (1.6)	389 (9.4)	786 (19.0)	6 (0.1)
2025	3,865 (100)	2,086 (54.0)	83 (2.2)	129 (3.3)	975 (25.2)	577 (14.9)	15 (0.4)

※ () 안의 숫자는 %

### 2 상담 처리결과

위원회 상담은 조정절차 안내가 3,730건(85.9%)으로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으로 타 기관 안내 280건(6.4%), 소송·고소·고발 안내 275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안내 비중이 상당한 이유는 상담 이용자들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비교적 정확히 인지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절차를 거쳐 구제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상담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소송·고소·고발 안내 및 타 기관 안내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기간이 도과했거나 상담대상 매체가 '언론'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조정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유형에 관한 상담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언론보도 플랫폼의 다변화와 이에 따른 피해 양상이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29. 최근 3년간 상담 처리결과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상담 건수	상담 처리결과					총계
		조정절차 안내	소송·고소·고발 안내	기타 위원회 업무 안내	타 기관 안내	기타	
2023	3,995	3,708 (80.5)	264 (5.7)	15 (0.3)	456 (9.9)	165 (3.6)	4,608 (100)
2024	4,133	3,937 (89.7)	191 (4.3)	16 (0.4)	248 (5.5)	90 (2.0)	4,482 (100)
2025	3,865	3,730 (85.9)	275 (6.3)	11 (0.3)	280 (6.4)	48 (1.1)	4,344 (100)

※ () 안의 숫자는 %

※ 복수 답변 시, 개별유형을 모두 집계한 것이므로 총계가 상담건수보다 많음

※ 기타는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 안내를 의미

### 3 상담매체 유형

상담 대상 매체 유형을 보면 인터넷신문이 3,013건(52.2%)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처음 과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방송 592건(10.2%), 인터넷뉴스서비스 524건(9.1%), 뉴스통신 362건(6.3%), 일간신문 311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 관련 상담이 70%에 육박해 신문·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의 피해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의 경우 그 피해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담 건수는 소폭 감소했음에도 상담매체 유형을 기준으로 한 전체 상담건수가 전년도에 비

해 증가한 것은 동일한 내용의 보도가 단일 매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과 형식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확산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0. 최근 3년간 상담매체 유형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상담건수	상담매체 유형										
		일간신문	주간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기타	불명	총계
2023	3,995	423 (7.5)	128 (2.3)	865 (15.3)	12 (0.2)	295 (5.2)	2,285 (40.4)	-	666 (11.8)	172 (3.0)	809 (14.3)	5,655 (100)
2024	4,133	736 (13.1)	153 (2.7)	615 (11.0)	6 (0.1)	257 (4.6)	2,641 (47.1)	-	446 (7.9)	74 (1.3)	685 (12.2)	5,613 (100)
2025	3,865	311 (5.4)	116 (2.0)	592 (10.2)	65 (1.1)	362 (6.3)	3,013 (52.2)	-	524 (9.1)	130 (2.3)	664 (11.5)	5,777 (100)

※ () 안의 숫자는 %

※ 매체유형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총계가 불일치

#### 4 상담대상 유형

언론보도에 대한 위원회 상담은 3,722건(93.8%)으로 여전히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기타 113건(2.8%), 언론사의 콘텐츠 총 102건(2.6%), 포털뉴스 18건(0.5%) 및 댓글 12건(0.3%)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언론사의 콘텐츠’는 언론사가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한 언론보도를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도 게시한 경우를 ‘전재’, 기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고 언론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만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를 ‘자체 콘텐츠’로 분류하였다.

언론사의 콘텐츠 관련 상담은 2023년 총 66건(1.6%)에서 2025년 102건(2.6%)로 증가하여 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가 확대되면서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에 보도된 언론보도에 대한 상담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언론중재법상 조정 대상에 포섭되지 않아 신문, 방송 등에 보도된 원 보도를 배제한 채 플랫폼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 최근 3년간 상담대상 유형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상담 건수	상담대상 유형						
		언론 보도	포털 뉴스	언론사의 콘텐츠		댓글	기타	총계
				언론 보도 전재	자체 콘텐츠			
2023	3,995	3,627 (88.8)	23 (0.6)	37 (0.9)	29 (0.7)	9 (0.2)	358 (8.8)	4,083 (100)
2024	4,133	4,004 (95.4)	17 (0.4)	28 (0.7)	33 (0.8)	8 (0.2)	105 (2.5)	4,195 (100)
2025	3,865	3,722 (93.8)	18 (0.5)	63 (1.6)	39 (1.0)	12 (0.3)	113 (2.8)	3,967 (100)

※ ( ) 안의 숫자는 %

※ 상담대상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대상의 총계가 불일치

※ 용어설명

- 언론사의 콘텐츠 :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전재된 언론보도 또는 자체 콘텐츠

## 5 피해구제수단

상담으로 파악한 신청인이 원하는 피해구제수단을 보면, 정정·반론보도가 3,328건(61.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손해배상 1,262건(23.5%), 열람차단 360건(6.7%)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 밖에 기사 수정 95건(1.8%), 추후보도 88건(1.6%), 고소·고발 64건(1.2%), 보도·배포금지청구 21건(0.4%), 기사 외 정보 삭제 17건(0.3%), 강제집행절차 11건(0.2%), 기사심의 10건(0.2%)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신청인들이 금전적 피해구제보다 정정 및 반론보도를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매체의 경우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다는 특성상 그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침해배제 성격의 열람차단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최근 3년간 피해구제수단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상담 건수	피해구제수단											총계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손해 배상	열람 차단	기사 수정	기사 외 정보 삭제	고소·고발	보도·배포 금지 청구	강제 집행 절차	기사/선거 기사 심의	기타	
2023	3,995	3,148 (61.0)	99 (1.9)	866 (16.8)	247 (4.8)	148 (2.9)	19 (0.4)	84 (1.6)	37 (0.7)	9 (0.2)	8 (0.2)	497 (9.6)	5,162 (100)
2024	4,133	3,637 (68.9)	86 (1.6)	944 (17.9)	264 (5.0)	116 (2.2)	14 (0.3)	48 (0.9)	7 (0.1)	8 (0.2)	11 (0.2)	147 (2.8)	5,282 (100)
2025	3,865	3,328 (61.80)	88 (1.6)	1,262 (23.5)	360 (6.7)	95 (1.8)	17 (0.3)	64 (1.2)	21 (0.4)	11 (0.2)	10 (2.3)	126 (2.3)	5,382 (100)

※ ( ) 안의 숫자는 %

※ 피해구제수단 유형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피해구제수단의 총계가 불일치

### 제3절 평가

위원회는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조하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뉴스 소비 플랫폼이 다양해진 만큼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 양상도 다변화하고 있다. 이에 각 매체유형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안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복잡다단해진 언론보도 피해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상담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전자조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신청내역 및 담당 중재부, 사건결과 등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조정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필요한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담 및 조정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 제2장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1절 개요

2025년 위원회는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총 300건의 교육을 실시하여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교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는 소규모, 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분쟁예방 교육과 언론인 전문연수를 비대면·대면(오픈형)을 적절히 활용해 진행하였으며, 대학생 연수를 부산 등 지역 권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아울러 언론고충처리인 연수에서 언론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유튜브 뉴스콘텐츠 제작자 연수를 진행하여 1인 미디어의 저널리즘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매체 환경 변화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전문 연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교육 신청 화면을 [상시 교육]과 [교육 연수]로 이원화하고 직관적으로 용어를 변경해 교육 신청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통계를 좀 더 정확히 관리하고자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교육을 상시 교육으로 편입하여 통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상세 교육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위원회는 <언론평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141건,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133건, 각급 기관·일반인·대학생 등 다양한 대상별로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 교육을 26회 진행하는 등 총 300건의 교육을 성료하였다.

대상별 <연수 프로그램>을 구분해 보면 먼저, 언론인 대상으로 진행한 <언론인 전문 연수>는 4회, <지역 언론인 워크숍>은 4회, <언론고충처리인 연수>는 1회 운영해 총 9회를 실시하였다.

<언론인 전문 연수>는 위원회 시정권고 제도 관련 커리큘럼을 추가해 차별 금지 등 사회적 법익 침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면 참석이 어려운 수강생들의 요청을 반영해 비대면 교육 3회, 대면 교육 1회로 총 4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QR 코드로 실시간 진행되는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기자들의 교육콘텐츠 수요를 반영해 유연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들로 수강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지역 언론인 워크숍>은 해당 지역기자협회와 협의해 4회 실시하였으며, 지역 언론인의 전문성과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다.

<언론고충처리인 연수>는 고충처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직 고충처리인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해 언론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층적인 위원회 제도 강의로 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

<예비 법조인 연수>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동·하계 연수를 총 2회 실시하였다. <예비 법조인 연수>는 헌법과 언론법, 전문 언론분쟁 변호사의 업무 및 법조전문 기자에게 듣는 취재현장 등 실무 중심의 조정·중재제도와 언론법제 강의로 구성하여 예비 법조인으로서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위원회는 2019년부터 각급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위탁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서대문50플러스센터와 맞춤형 위탁 연수를 4회 진행하였으며, 저작권 기본 개념과 미디어 리터러시, 위원회 조정제도와 관련한 교육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올해 진행한 맞춤형 위탁 연수를 기점으로 서대문50플러스센터(2025. 5.),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2025. 7.)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중장년층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과 미디어 관련 교육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대학(원)생 연수>는 총 6회 실시하여 언론피해구제제도와 조정 사례 교육, 현직 언론인 특강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언론법학회와 협력해 마련한 연수 과정에서 언론법제 관련 학계의 최신 논의를 공유하였다.

<일반인 연수>는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 및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총 4회 실시하였는데, 사회적 약자 관련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유형과 상황에 부합하는 피해구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2021년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팀 단위의 조를 편성해 경쟁을 펼치는 <모의조정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5년에는 18개 팀, 총 74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3개 팀을 선발해 경연을 펼쳤다.

표 33. 2025년도 교육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구분	상시접수 교육	연수 프로그램	계
언론인	25	9	34
(예비)법조인	0	2	2
대학생	21	6	27
초·중·고 학생	133	0	133
공무원 등	88	0	88
기업 임직원	4	0	4
기타	3	9	12
계	274	26	300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2025년 위원회는 상시 교육인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총 141회 실시하였다. 수강 대상별 분류를 보면 공무원 등 88회, 언론인 25회, 대학생 21회, 기업 임직원 4회 순이었다.

한편,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그 외 인격권 침해> 등의 대상별 커리큘럼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고, 과정별 새로운 사례들을 발굴하였다.

표 34.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2023. 1. 1. ~ 2025. 12. 31. / 단위 : 회)

연도	언론인	대학생	공무원 등	기업 임직원	기타	계
2023	30 (873)	18 (431)	125 (5,850)	3 (31)	0 (0)	176 (7,185)
2024	18 (341)	15 (456)	112 (4,176)	3 (48)	0 (0)	148 (5,021)
2025	25 (514)	21 (627)	88 (3,144)	4 (52)	3 (50)	141 (4,387)

\* ( ) 안의 숫자는 교육인원

### 2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위원회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소양 함양을 위해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자유학기제 실시, 교원 네트워크와 꿈길 등의 홍보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5년 스쿨은 총 133건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년도 81건에서 52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약 1.6배(64.2%↑)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위원회의 주요 교육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 3 언론인 대상 연수

#### 가. 언론인 전문 및 언론고충처리인 연수

2025년 <언론인 전문 연수>는 총 4회, <언론고충처리인 연수>는 1회 진행하였다.

언론인 전문 연수는 소규모 및 지역 언론사 소속 언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 3회, 대면(오픈형) 1회를 혼합 진행하였으며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저널리즘 환경과 저널리스트로서 역할 고찰 등 최신 경향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강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시정권고 심의 기준 및 사례 학습의 커리큘럼을 강화하여 차별 금지를 포함한 사회적 법익 침해 관련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언론고충처리인 연수에서는 최신 사례에 기반한 구체적인 분쟁 해결 기법을 제시하고,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표 35. <언론인 전문 연수>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4. 3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 소속 기자	20명
제2차 언론인 전문 연수	9. 2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 소속 기자	20명
제3차 언론인 전문 연수	11. 27.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 소속 기자	18명
제4차 언론인 전문 연수	12. 11.	(오픈형 모집) 언론인	31명
2025년도 언론고충처리인 연수	6. 20.	언론사 고충처리인, 고충처리 관련 실무자	27명

## 언론인 전문 연수



### 나. 지역 언론인 워크숍

위원회는 <지역 언론인 워크숍>을 대전·세종·충남(4월), 인천·경기(6월), 강원(10월), 전북(11월)에 서 총 4회 진행하였다. 지역 언론인들의 저널리즘 전문성 및 윤리적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개최된 지역 언론인 워크숍은 정정·반론보도 신청에 대한 실무적 대응 노하우, 언론인의 트라우마와 심리 건강, AI 검색 시대 지역 언론의 대응 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표 36.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4. 3.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14명
제2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6. 26.	인천경기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23명
제3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0. 24.	강원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및 강원언론학회 회원	19명
제4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1. 19.	전북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10명

## 지역 언론인 워크숍



## 4 예비 법조인 연수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 법조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총 2회 실시하였다.

예비 법조인 연수는 사례로 보는 언론 조정절차 및 언론 판례, 협상 이론 등의 주제로 5일간 진행되었으며 예비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깊이 있게 제공하였다.

표 37. <예비 법조인 연수>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예비 법조인 연수	2. 17. ~ 2. 21.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
하계 예비 법조인 연수	8. 18. ~ 8. 22.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17명

### 예비 법조인 연수



## 5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연수

위원회는 올해 총 5회의 대학생 연수(서울 4회, 부산 1회)와 대학원생 연수 1회를 실시하였다. 대학생 연수는 현직 언론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관련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예비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저널리즘 윤리와 규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연수 후 간담회 등으로 언론인 지망 대학생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대학원생 연수는 한국언론법학회와 협력하여 올해 처음 진행하였으며, 언론법 분야를 중심으로 학계의 최신 논의를 공유하였다.

표 38. <대학생 연수>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대학생 연수 (서울)	2. 24. ~ 2. 25.	전국 대학생	27명
제2차 대학생 연수 (부산)	5. 13.	전국 대학생	8명
제3차 대학생 연수 (서울)	7. 31.	전국 대학생	23명
제4차 대학생 연수 (서울)	8. 5.	수원대학교 학보사 기자	12명
제5차 대학생 연수 (서울)	8. 13.	전국 대학생	24명
2025년도 대학(원)생 연수	11. 27.	대학(원)생	11명

대학생 연수



6 맞춤형 위탁 연수

위원회는 기관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맞춤형 위탁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 서대문50플러스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중·장년층의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 미디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상호 협력하였다.

올해는 기관 간 MOU의 일환으로 총 4회의 맞춤형 위탁 연수를 실시하였다.

※ MOU에 따른 서울시 산하 50플러스센터와 맞춤형 위탁 연수 4회, 언론피해 구제교육 3회 실시

표 39. <맞춤형 위탁 연수>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맞춤형 위탁 연수	2. 20.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하는 즐거운 미디어생활> 강좌 수강 신청자 (서대문50플러스센터)	19명
제2차 맞춤형 위탁 연수	5. 22.		16명
제3차 맞춤형 위탁 연수	9. 18.		15명
제4차 맞춤형 위탁 연수	11. 13.		15명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 MOU 현장



서대문50플러스센터 MOU 현장



### 맞춤형 위탁 연수



## 7 일반인 연수

위원회는 기업·기관 홍보 담당자,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 및 범죄 피해자 지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 연수>를 총 4회 실시하였다.

일반인 연수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디지털 홍보 전략, 시정권고 사례를 바탕으로 혐오·차별적 표현 예방,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표 40. <일반인 연수>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일반인 연수	3. 14.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 종사자	14명
제2차 일반인 연수	6. 27.	기업 및 기관 홍보 담당자	36명
제3차 일반인 연수	10. 20.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 담당자	31명
제4차 일반인 연수	12. 9.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담당자	22명

### 일반인 연수



## 8 모의조정대회 개최

위원회는 조정·중재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팀 단위의 조를 편성해 경쟁을 펼치는 <모의조정대회>를 5년째 개최하고 있다. 2025년에는 18개 팀, 총 74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서면 심사 후 최종 3개 팀이 추려져 경연을 펼쳤다.

모의조정대회는 언론분쟁해결뿐만 아니라 분쟁해결 분야(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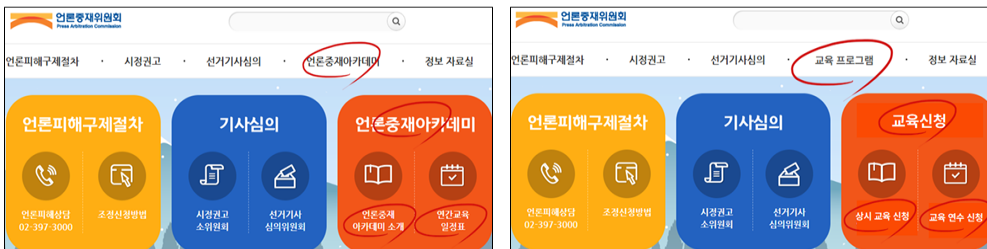
모의조정대회 시상식



## 9 홈페이지 교육 메뉴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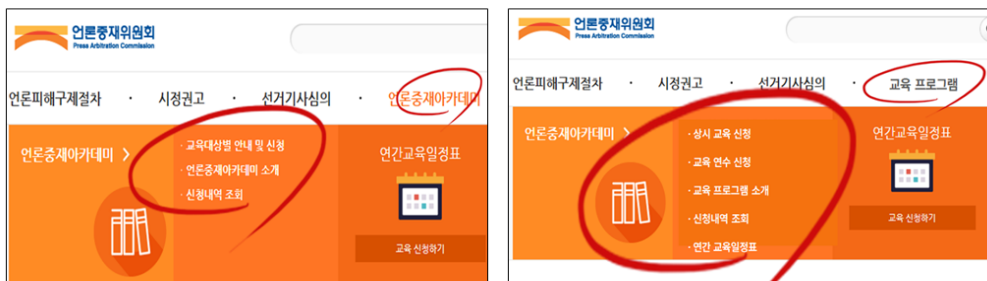
2025년 위원회는 이용자 친화적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 신청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다. 기존의 혼재되었던 신청 메뉴를 [상시 교육]과 [교육 연수]로 이원화하고, 대상별 맞춤 신청 기능을 도입하여 직관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신청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다.

### 홈페이지 교육 메뉴 개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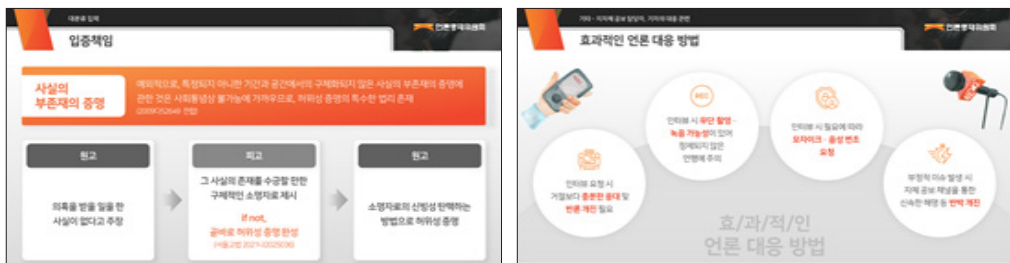
#### 연수 프로그램

연론인 >	예비 범조인 >	대학생 >
맞춤형(단체) 위탁 >	일반인 >	

## 10 교육 PPT 개발

위원회는 지역 사무소 자체 개발 교육 자료의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위원회 PPT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PPT 템플릿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템플릿은 PPT의 가독성을 높여 지역 사무소 교육 콘텐츠로 보완될 예정이다.

### 교육 PPT 개발



## 제3절 평가

2025년 위원회는 역대 최대 교육 실적을 달성해 2020년 이후 최대치인 연간 300건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자체, 학회, 유관 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생부터 언론사 고충처리인, 유튜브 제작자까지 교육 대상을 다각화하여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위원회 교육사업의 세부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서비스 접근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지역 대학생을 위한 권역별 연수를 신설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회와의 홍보 협력으로 대학 상시 접수 교육을 전년 대비 약 40% 증대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 수요를 창출하였다.

또한 교육 접근성이 낮은 군소 언론사 기자들을 위해 비대면 및 대면(오픈형) 연수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수강 기회를 넓히고 홈페이지 메뉴를 대상별·과정별로 세분화하여 개편함으로써 이용자 직관성을 높이고 신청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였다.

둘째, 교육 내용을 전문화하고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였다.

언론고충처리인, 유튜브 제작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연수를 확대하여 현장의 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위원회 조정제도에 대한 전문적·실무적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따른 저널리즘의 책무성 교육을 선도하여 저널리즘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셋째,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2025년에는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 및 서대문50플러스센터와 MOU 체결, 한국언론법학회와 협업, 유튜브 뉴스 제작자 등 1인 미디어들 대상 교육을 진행하면서 계층 간 경계 없는 교육 복지를 실현하였다. 또한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유튜브의 조정대상 포섭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회를 창출하였다.

2026년에는 교육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교육 콘텐츠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정책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차별 금지 등 사회적 법익 관련 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뉴스콘텐츠 유튜브'의 조정대상 매체 포함 필요성을 교육과정에 적극 편성해 법 개정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기자협회와의 전국 단위 사업 등 교육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여건에 맞게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접근성을 더욱 향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의 기법 및 역량 강화 교육 기회를 전 직원에게까지 확대하고 AI 프레젠테이션 툴과 판례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여 에듀테크 기반의 업무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명예훼손 및 위법성, 시정권고, 선거기사심, ADR과 설득커뮤니케이션 등 분야별 심화 교육을 편성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전 직원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위원회 전체의 직무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제3장

##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 제1절 개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는 미디어 및 언론법제 분야의 이슈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2025년에는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확대·개편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1월 14일자로 기존 연구팀을 연구센터로 확대·개편하고 3월 17일자로 박사급 및 보조 연구원 등 연구인력을 신규 배치하여 언론분쟁과 관련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구센터는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사업, 학술세미나 개최, 해외제도연구 교류협력 및 학회 후원 세션 실시, 현안보고서/미디어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하였다.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서는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인격권 보호의 방향과 언론중재제도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계간 <언론중재>에서는 [FOCUS ON MEDIA], [사건 속 법률], [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판례토크] 등 다양한 코너에서 미디어 법제 전반의 중요 이슈를 소개하고 판례·입법·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는 체계를 정비하여 기존에 1년간의 언론관련판결을 분석하던 방식에서 3년간의 확정된 언론관련판결을 통계를, 쟁점별로 분석하는 것으로 그 분석대상을 정교화하고 확장하였다.

연구용역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과제 연구결과물이 3건 도출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2025년 6월에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12월에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 가.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심화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2025년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에서 표현의 자유, 미디어 규제, 저널리즘 윤리, 인공지능과 플랫폼 책임을 조망하는 기획을 추진하였다. 각 호는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인격권 보호의 방향과 언론중재제도의 역할을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데 집중하였다.

학술지 제11권 제1호에서는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 10주년을 맞아 디지털 시대 미디어와 인격권을 주제로 축적된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간 게재된 연구를 중심으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인격권 침해 양상을 정리하고, 주요 연구 주제와 논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격권 보호를 위한 학문적 논의의 축적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및 제도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학술지 제11권 제2호는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적 과제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 확산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유튜브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및 독일·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학술지 제11권 제3호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미디어 정책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정보 유통 구조의 플랫폼화가 공론장 형성, 표현의 자유, 인격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법제도 정비와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2025년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1호~제3호) 수록 논문



구분	저자	논문제목
제1호	기획 논문	김민정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10년의 연구 동향과 학문적 영향력
		노현숙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검토 -초상권을 중심으로 -
	연구 논문	구문선, 유영권, 이재진 언론인의 번아웃과 대처, 회복 경험에 관한 연구
		이수종 초상권 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독일 법원의 단계적 보호개념에 관한 고찰
제2호	기획 논문	권형돈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부상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의 확대 가능성 -유튜브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
		박선영, 이준환 언론중재법의 20년 입법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역대 제·개정법안 및 회의록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 논문	윤장열 통합미디어법 도입을 위한 제언 -유럽연합, 독일, 영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제3호	기획 논문	장선미 디지털 헌정주의 관점에서 본 민주적 미디어 플랫폼 공동규제 모델의 규범적 설계
		정 란 자동화된 의사결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 한국 법제도의 시사점
		노현숙 디지털 미디어 광고·홍보 환경에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연구 논문	최영재 AI 시대 한국 언론의 'AI 포획'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론 자율성 침식 위험과 규범적 대응의 방향 -

## 나. 계간 <언론중재>

계간 <언론중재>는 미디어 법제 전반에 관한 전문적 논의를 독자에게 꾸준히 전달해 왔다. 특히 단편적인 이슈 소개에 그치지 않고 판례·입법·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2025년에는 매체 환경과 법·제도적 환경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시의성과 문제의식을 겸비한 주제를 중심으로 코너를 구성했다. 메인 코너인 [Focus on Media]의 봄호에서는 팩트체크를 둘러싼 플랫폼의 책임 문제에 초점을 두고, 허위정보 확산 환경에서 언론과 플랫폼의 역할을 법제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여름호에서는 연예인의 사생활 보도를 둘러싼 인격권 침해 문제를 다루면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가을호에서는 대선 이후 기획으로서 선거를 둘러싼 미디어 지형 변화와 언론의 역할을 살펴보고, 겨울호에서는 2025년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AI 기술이 미디어 산업, 저널리즘, 관련 제도 전반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코너에서는 AI 학습에 활용되는 뉴스 저작권과 공정이용 논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고인(故人) 재현이 초래하는 법적·윤리적 문제 등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코너에서는 암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례, 자신이 게시한 글에 달린 댓글을 관리하지 않은 정치인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등을 소개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 주체와 범위를 둘러싼 현대 사회의 법적 쟁점을 조망했다. 또한 [판례토크]에서는 베껴 쓴 기사에 대한 책임 인정 사례와 대법원 변론 영상 공개에 따른 초상권 침해 논란 등을 다루었다. [칼럼] 코너는 재난보도, 기 후보도와 같은 저널리즘 주제 및 브레인 룯(brainrot, 뇌섹음), OTT를 통한 K-컬처의 황금기와 같이 폭넓은 사회현상을 주제로 다루었다.

2025년도 계간 <언론중재> 봄호 (통권 174호) 내용



호수	주요 내용
2025년 봄호 (통권 174호)	<p><b>[Focus on Media 정보 신뢰의 위기와 팩트체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타, 팩트체크를 내려놓다 - 가짜뉴스 현주소와 플랫폼의 책임 (윤지원 Ph.D. Fellow Scholar, Media Education Lab)</li> <li>플랫폼 팩트체크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김경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li> <li>‘플랫폼 내 팩트체크’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한 헌법적 쟁점 (조영승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연구교수)</li> </ol> <p><b>[사건 속 법률]</b> 디지털 유산의 일신전속성 (이성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p> <p><b>[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b> 틱톡 ‘블랙아웃 챌린지’와 10세 소녀의 죽음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유 외국변호사(캘리포니아 주), 백지원 변호사)</p> <p><b>[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b> 인공지능 시대의 뉴스 저작권 및 공정이용 논란: 최근 미국 판례와 한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p> <p><b>[판례토크]</b> 다른 기사 참조, 명예훼손의 정당한 항변이 될까?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p> <p><b>[칼럼]</b> 재난보도와 트라우마: 언론의 역할과 책임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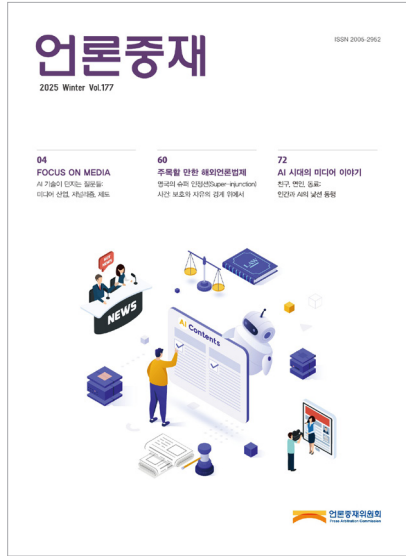


호수	주요내용
2025년 여름호 (통권 175호)	<p><b>[Focus on Media 연예인 사생활 보도와 인격권 침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활약과 언론의 기생 (최지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li> <li>2. 연예인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 사이 (홍선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li> </ol> <p><b>[학술세미나 발제문]</b>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과제 (윤재남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p> <p><b>[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b> 뉴스플루언서의 개념과 분류기준 분석: 국내외 논의 동향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정서현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원, 언론학 박사)</p> <p><b>[사건 속 법률]</b> 청소년 SNS 규제: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 (최형준 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변호사)</p> <p><b>[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b> “돌려 말해도 명예훼손?” ‘암시’로 책임지게 된 Zachary Young vs. CNN 사건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p> <p><b>[판례토크]</b> 이름이 낙인이 될 때, 지명과 혐오표현의 경계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p> <p><b>[칼럼 언론법학자의 시선]</b> 브레인 룯(뇌섹음), 뇌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장래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학과 교수, &lt;브레인&gt; 매거진 편집장)</p>

2025년도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 (통권 176호) 내용



호수	주요 내용
2025년 가을호 (통권 176호)	<p><b>[Focus on Media 미디어와 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에서 유튜브까지, 미디어와 정치의 공진화 (정일권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li> <li>제21대 대선으로 본 선거 미디어 지형의 변화 (이신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li> <li>선거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과제 (정낙원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li> </ol> <p><b>[사건 속 법률]</b> 가상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모욕은? (곽재우 법무법인(유한) 광장 파트너변호사, 정은주·이성풍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p> <p><b>[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b> 댓글도 방치하면 범죄?: 혐오 표현을 담은 온라인 댓글을 방치한 정치인의 책임에 관한 Sanchez v. France 사건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p> <p><b>[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b> 죽음을 넘어서는 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부활과 애도 기술에 대한 고찰 (우숙영 미디어아티스트, 미디어디자인학박사)</p> <p><b>[판례토크]</b> 반복되는 온라인 괴롭힘, 어떤 법으로 막아야 하나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p> <p><b>[칼럼]</b> 기후 감수성에 대한 인식과 실재: 기후 리터러시 부재가 만든 악순환 (박상욱 JTBC 기자)</p>



호수	주요내용
2025년 겨울호 (통권 177호)	<p><b>[Focus on Media AI 기술이 던지는 질문들: 미디어 산업, 저널리즘, 제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I 기술이 흔든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쟁점들 (김경달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겸임교수)</li> <li>2. 뉴스룸에 들어온 인공지능 기술, 독일까 독일까? (오세욱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li> <li>3. 우리는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언론보도와 AI를 둘러싼 법·제도적 문제들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li> </ol> <p><b>[사건 속 법률]</b> AI 기술의 성별 편향성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미국의 「TAKE IT DOWN Act」 제정 사례와 한국 법제의 과제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이경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p> <p><b>[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b> 영국의 슈퍼 인정선(Super-Injunction) 사건: 보호와 자유의 경계 위에서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p> <p><b>[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b> 친구, 연인, 동료: 인간과 AI의 닳선 동행 (오철우 국립한밭대학교 과학기술학 강사, 전 한겨레 과학담담 기자)</p> <p><b>[판례토크]</b> 재판 공개의 빛과 그림자: 대법원 변론 영상과 초상권 침해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p> <p><b>[칼럼]</b> 컨버전스 컬처, 글로벌 문화의 장이 된 넷플릭스 (김현식 중원대학교 특임교수,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p>

## 다. <202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는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비롯한 언론분쟁해결 실무와 언론법제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각급 법원의 언론 관련 민사 판결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했다.

2025년 9월 초 발간된 <202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는 총 2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 장의 분석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언론소송 판결 502건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내에 확정된 사건 288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 1 장 제1부에서는 판결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원·피고 승소율, 손해배상액 분포 등 일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결 추이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별 사건을 넘어선 언론 관련 판결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제 1 장 제2부에서는 소송 당사자의 범위와 지위, 사회적 평가 저하 표현의 인정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이로써 법원이 판단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에 대한 최근 판결 경향을 정리했다.

제 2 장에서는 2024년에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중 주요 사건을 선별하여 총 17건을 수록하고, 각 판결의 전문과 판결 이유,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상세히 제시했다. 해당 판결들은 손해배상청구, 보도거제청구, 기사삭제청구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형사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포함한 기타 판결도 함께 다루어 유관 판결까지 폭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 202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라.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

위원회는 언론학과 법학 분야에서 미디어 및 인격권 보호와 관련한 해외 동향, 이론, 판례 등 주요 현안을 연구·조사하여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먼저 언론학 분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뉴스 유통 주체와 규제 환경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현안보고서인 ‘뉴스플루언서의 개념과 분류기준 분석: 국내외 논의 동향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뉴스 인플루언서 현상에 대한 국내외 학술·정책적 논의를 종합하여 뉴스플루언서의 개념 정의와 유형화 기준을 이론적·비교법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로써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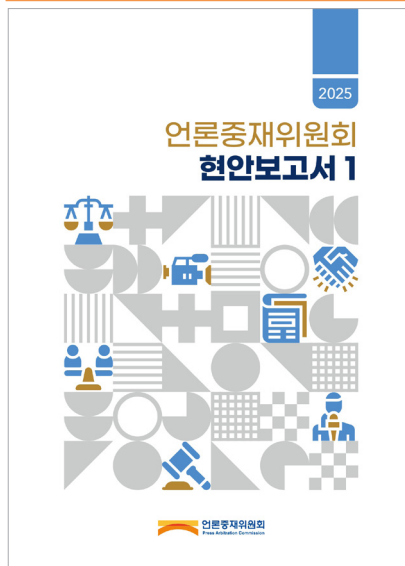
언론과 비전문 저널리즘 주체의 경계가 흐려지는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플루언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 분석 틀을 제공하였다.

‘디지털서비스법(DSA) 운영 체계의 주요 기관 동향 분석’에서는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의 감독 구조와 집행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유럽집행위원회, 디지털 서비스 조정기관(DSC), 법정 외 분쟁 해결기관(ODS)으로 구성된 DSA의 감독 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틱톡 사례를 들어 DSA의 집행력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법정 외 분쟁 해결제도가 권고적 성격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제수단과 플랫폼 내부 절차 사이의 중간 단계로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 모델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국내 디지털 플랫폼 관련 법제와 분쟁 해결제도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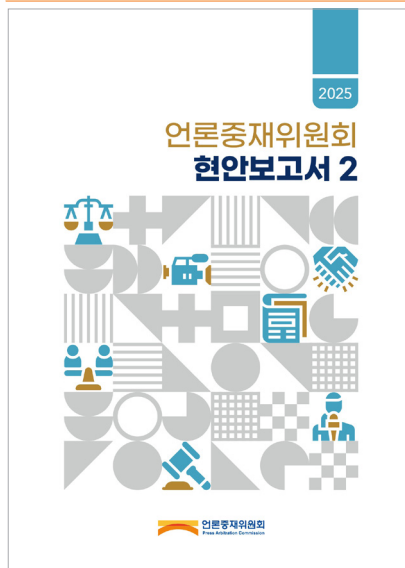
법학 분야에서는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현황과 최근 결정 사례’를 주제로,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CDJM)의 설립 배경, 절차와 현황 및 2025년 결정례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운영 원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진실성, 정보·의견의 구분, 제목과 내용의 정합성, AI 콘텐츠의 명시, 반론권 보장을 핵심 윤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제재권 없이 의견서 공표로 민주주의와 언론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AI·디지털 환경에의 적응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변화하는 미디어 구조와 인격권 보호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언론규범과 분쟁 해결 체계의 재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뉴스 유통 주체, 플랫폼 규율, 언론윤리 자율규제를 하나의 거버넌스 틀 안에서 조망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의 기준과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025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 1



## 2025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 2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	
연구자	제목
정서현	디지털서비스법(DSA) 운영 체계의 주요 기관 동향 분석
최인화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현황과 최근 결정 사례

**마. <2025년도 미디어법제 연구보고서>**

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구제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새로운 뉴스 소비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2025년도 미디어법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연구 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연구보고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구제제도 형식의 시기별 변화 분석’을 주제로, 위원회의 조정 성립 사건을 대상으로 시기별·매체별 피해구제제도 형식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위원회의 조정 대상 매체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구제제도 형식 역시 각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다변화·정교화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매체에서 인터넷 신문, 나아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조정 대상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피해구제제도의 시각적 가시성과 원보도의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복합적 형식이 도입·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피해구제제도 형식의 발전 양상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두 번째 연구보고서는 ‘유튜브 관련 인격권 침해 판결 분석과 법제 개선 방안—2022~2024년 국내 민·형사 판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최근 3년간 선고된 유튜브 관련 인격권 침해 사건의 민·형사 판결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튜브 관련 인격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전통적 명예훼손 법리를 기본 틀로 유지하면서도, 채널의 공익·저널리즘 기능, 전파력, 수익 구조, 표현 형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판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환경에서 인격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이 「2025년도 미디어법제 연구보고서」는 위원회의 실제 조정 사례와 사법부 판결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피해구제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작동하고 있는지를 실증적·법리적으로 조망하였다. 피해구제제도 형식의 진화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인격권 침해 판단 기준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5년도 미디어법제 연구보고서	
연구자	제목
정서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구제제도 형식의 시기별 변화 분석
최인화	유튜브 관련 인격권 침해 판결분석과 법제 개선 방안

## 2 연구용역

2025년 연구센터는 기존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업무를 연구용역사업으로 확장하였고, 위원회 제도·업무에 실질적인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술연구뿐 아니라 정책연구까지 연구과제의 폭을 넓혔다. 또한 해당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위원회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예규」를 2월 21일 자로 제정하였다.

2025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은 총 3건으로 각 연구과제는 ①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연구(이하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 ②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방안 연구(이하 ‘시정권고 심의기준 관련 연구용역’), ③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자원 현황 분석 및 최적화 방안 연구(이하 ‘운영 자원 관련 연구용역’)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은 유튜브 뉴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개인 및 일반사업자 중심의 유튜브 뉴스 콘텐츠 생산은 사실 확인 절차가 미흡하거나 왜곡보도로 이어지더라도 효율적·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의 경우 언론중재법상의 조정대상으로 포섭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유튜브 뉴스 콘텐츠 중에서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자 ‘구독자 수’나 ‘계속성’과 같은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는 유튜브 뉴스채널들(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전 세계 유튜브 ‘뉴스/정치’ 카테고리 월간 인기 순위 상위 1~200위)의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한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 등은 다년간 논의되어 왔으나 그간 개정안이 제시된 바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실질적 언론개념에 기초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용역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관련 연구용역은 국내 언론 관련 기구의 심의규정을 비교분석하고 시정권고 심의 기준의 조항별 상위법 체계를 살펴보았다. 상위법과의 체계 정합성 점검 등으로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각종 보도권고기준 제·개정 등을 반영한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작업 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 자원 관련 연구용역은 위원회 운영 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예산동결 및 사업비 감액과 같은 현 재정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위원회 설립과 법적 근거, 수행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안정적인 자원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3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가. 학술세미나

2025년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위원회는 (사)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시행 20년간의 제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간 드러난 한계점을 되짚어보는 한편,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실효적 언론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였다.

발제에 앞서 학술세미나 서두에는 언론중재제도의 도입과 안착에 기여한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 위원장(변호사, 현 언론법학회 고문)이 <디지털 피해구제제도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제1주제 발표에서는 윤재남 언론중재위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언론중재법 시행 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윤 부장판사는 언론중재제도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터넷 미디어 중심의 환경 변화에 비해 현행법은 여전히 전통 매체 중심의 틀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 부장판사는 유튜브 등 새로운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면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 개념과 같은 방식으로 언론중재법상 ‘언론등’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반복하여 방송하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으로 얻은 수익을 회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로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전통적 매체 분류법을 따르는 현행 언론중재법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와 언론의 책무 수행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평가 등에 비춰볼 때,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과 전·현직 언론인이 운영하는 시사보도 채널 등을 우선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입법방안과 관련하여 이 교수는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언론중재법상 언론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이 명확성 원칙 등 위헌법률심사기준을 통과하도록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제1주제에 대해서는 한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제2주제에 대해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와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변화된 환경 속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문제를 언론법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법학회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였다. 위원회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피해구제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도 학술세미나 개최현황	
일 자	2025. 6. 13.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주제 :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주제 : 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li> <li>제2주제 :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li> </ul> </li> <li>• <b>기조연설자, 사회자,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조연설자 : 박용상(변호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li> <li>- 사회자 : 이재진(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li> <li>- 발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주제 : 윤재남(서울제8중재부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li> <li>제2주제 :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 중재위원)</li> </ul> </li> <li>- 지정토론자(가나다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선(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li> <li>- 장철준(단국대 법학과 교수)</li> </ul> </li> <li>제2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영섭(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li> <li>- 손형섭(경상대 법학과 교수)</li> </ul> </li> </ul> </li> </ul> </li> </ul>

## 2025년도 학술세미나



## 나. 토론회

위원회는 2022년부터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여 매년 300여 건의 유튜브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어나는 인격권 침해 내지 분쟁은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2025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이 유튜브 조정 현황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유튜브 관련 효율적인 피해구제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결과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을 지낸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변호사,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윤선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 대표기자,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선 교수는 언론중재법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로서 구독자 수, 계속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게시된 것”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규정해 위원회 조정대상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법 개정으로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토론회에서 표시영 교수는 연구용역 설문조사(총 1,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를 인용하였는데, 유튜브 중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매우 컸으며, 뉴스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32명(93.2%)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튜브 뉴스는 영향력 면에서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이다.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 2025년도 토론회 개최현황

일자	2025. 12. 4.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주제 :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주제 : 유튜브 조정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li> <li>제2주제 : 유튜브 뉴스채널의 유형과 피해구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li> <li>제3주제 : 유튜브 뉴스콘텐츠 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의 검토</li> </ul> </li> <li>• <b>사회자,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 김경희(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전 중재위원)</li> <li>- 발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주제 :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변호사)</li> <li>제2주제 : 표시영(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li> <li>제3주제 :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 중재위원)</li> </ul> </li> <li>- 지정토론자(가나다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준현(언론인권센터 변호사)</li> <li>박종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장윤선(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 대표 기자)</li> <li>차기현(광주고등법원 판사)</li> <li>허윤철(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li> </ul> </li> </ul> </li> </ul>

## 2025년도 토론회



## 4 해외제도연구 교류협력 실시

위원회는 2025년도 해외제도연구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16회 미디어 아시아(MediAsia) 2025에 사무처 직원을 파견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가별 정치·사회·문화적 맥락과 플랫폼 중심의 정보 유통 구조가 저널리즘의 성격과 공론장 형성, 인격권 침해 양상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협력단은 주요 세션에서 전통매체의 영향력이 약화된 환경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허위정보, 혐오·공격적 표현,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인격권 침해가 개별 콘텐츠의 문제를 넘어 플랫폼을 통한 재유포와 알고리즘 노출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인격권 침해를 단일 행위나 보도의 결과로 한정하기보다 피해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경로와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AI 기술 확산이 뉴스 생산과 유통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존 인격권 침해 양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되었다. 이번 해외제도연구 교류협력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법적 판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정·중재로 피해회복과 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제도연구 교류협력



## 5 학회 후원 세션 실시

위원회는 <공론장의 신뢰 회복과 유튜브 저널리즘의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가 공론장과 인격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국언론학회 2025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언론중재위원회 후원 세션을 개최하였다. 이번 세션에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저널리즘의 확산이 여론 형성과 표현의 자유, 인격권 보호에 제기하는 과제를 규제와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제1발제에서는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규제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유튜브 저널리즘 규제 논의의 핵심 쟁점을 다루었다. 데버라 스톤(Deborah Stone)의 정책 패러독스 이론을 적용해 규제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대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이나 개별 콘텐츠 중심 규제를 넘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과 함께 유튜브 뉴스 채널의 언론중재법 적용 가능성 등 향후 제도 설계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제시하였다.

제2발제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구조와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다. 언론중재법상 '언론' 개념과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각 법률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제도연구 콘퍼런스 용역



## 6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실시

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언론 자율규제 및 피해구제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2차에 걸쳐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사무처 직원을 스웨덴과 일본의 언론 유관 기관에 파견하여 각국의 언론환경과 언론 자유 및 공적 책임의 조화, 자율규제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하였다.

1차 사업 참가자들은 스웨덴 미디어청, 공영방송 SVT, 미디어 옴부즈만(MO) 등을 방문하여 공영 미디어의 콘텐츠 관리 방식과 가짜뉴스 및 인공지능 기반 정보 확산에 대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적 구속력에 의존하지 않는 스웨덴의 미디어 환경을 배경으로 위원회의 조정·중재 제도를 소개하고, 제도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2차 사업 참가자들은 일본 팩트체크센터(JFC), 일본신문협회, 게이오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일본의 자율규제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유튜브와 SNS 등 비등록 매체를 통한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 실태를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언론조정중재제도와 관련한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로 사전적 관점에서 자율규제의 역할과 향후 제도적 과제를 고찰할 예정이다.

###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 제3절 평가

위원회의 조사·연구 활동은 국내외 언론법제와 주요 판결 연구, 유관 기관의 제도 및 동향 파악 등으로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5년 연구용역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법제 주요 현안을 연구과제로 설정하였고

위원회 제도·정책의 발전과 밀접한 주제로 연구영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술세미나를 열어 언론학·법학 관련 학술적 논의의 장을 신규로 마련하였으며 해외제도연구 교류협력으로 해외 학술세미나에 참가하고 해외 관련 기관 및 학회들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마련하는 기틀을 다졌다. 학회 후원 세션을 실시해 위원회 연구역량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내 학자의 위원회 법제 관련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기회로 삼았다. 현안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위원회와 관련된 언론학·법학 분야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미디어법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위원회와 관련된 언론학·법학 관련 주요 이슈를 1년 동안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수록하였다. 또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서는 연구센터 확대·개편으로 신규 배치된 전문 인력이 언론관련판결의 쟁점별 분석을 실시하여 수록함으로써 분석보고서 수록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위원회는 다양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디어·언론 법제 관련 연구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국내외에 소개하고 위원회 법정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조사·연구 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제4장

## 이용만족도 조사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공적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매년 조정·중재, 상담,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유형의 인격권 침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조사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근거로 삼고 있다. 조사 결과의 상세 내용은 책자는 물론 홈페이지 내 전자문서 형태로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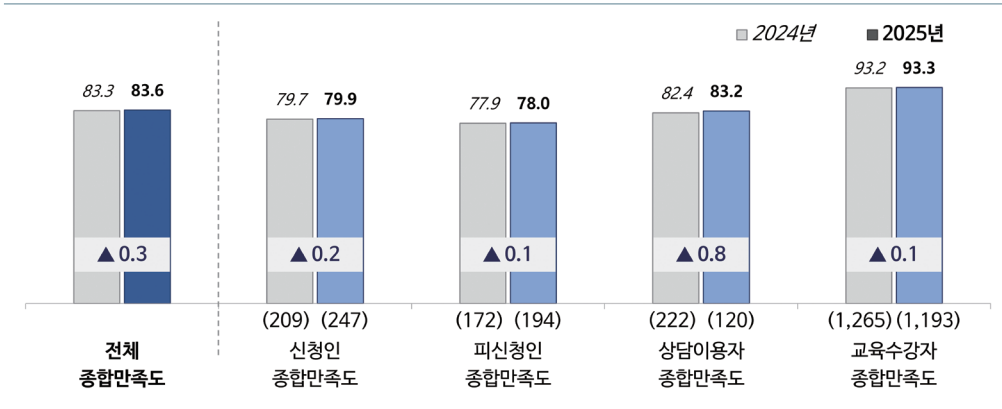
2025년 이용만족도조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쥬리서치리얼컨설팅에서 진행하였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언론조정중재신청사건 심리에 참석한 신청인/피신청인 441명(신청인 247명, 피신청인 194명), 상담이용자 120명, 교육수강자 1,193명 등 총 1,7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에 따라 온라인(웹) 조사, 전화 면접조사, 현장조사 등의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별 평가항목은 신청인/피신청인 공통으로 ▲심리 전 절차 안내, ▲중재부의 심리 진행, ▲심리 후 절차 안내 등으로 구성해 차원별 세부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차원별 중요도를 반영한 종합만족도 역시 살펴보았다. 접수 단계를 거치는 신청인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인 대상으로는 ▲상담창구 만족도, ▲조정 신청과정 만족도를 별도 조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피해구제 방식과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려고 신청인/피신청인/상담이용자 공통으로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열람차단(삭제) 청구권 도입 필요성,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증설 필요성 등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해 향후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위원회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이용의 편리성, ▲상담원 친절성, ▲상담원 경청자세, ▲상담내용 신뢰성, ▲문제해결 도움도, ▲전반적 만족도 등 총 6개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상담 후 조정신청 여부 및 위원회 이미지, 인지도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위원회 주관의 언론중재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주제 및 내용, ▲제도에 대한 이해,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 ▲교육자료 충실성, ▲강사의 성의 및 태도, ▲전반적 만족도 등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만족도를 평가하였다.

## 2025년도 전체 종합만족도 및 조사대상별 만족도

단위: 점, Ba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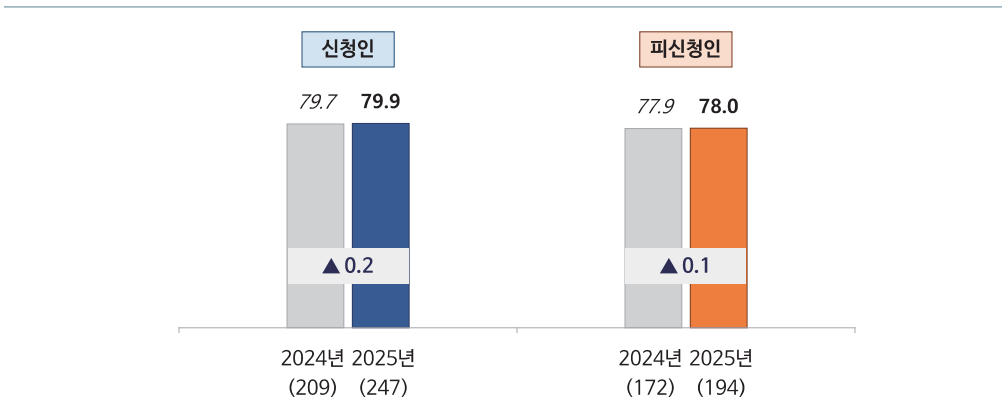
## 제2절 주요 조사결과

###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2025년도 신청인 종합만족도는 79.9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상승하였고,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78.0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신청인/피신청인의 종합 만족도가 모두 소폭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신청인/피신청인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상담창구'(87.6점) > '심리 전 절차 안내'(83.7점) > '심리 후 절차 안내'(81.7점) > '조정 신청과정'(77.8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75.7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 전 절차 안내'(83.2점) > '심리 후 절차 안내' (81.8 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69.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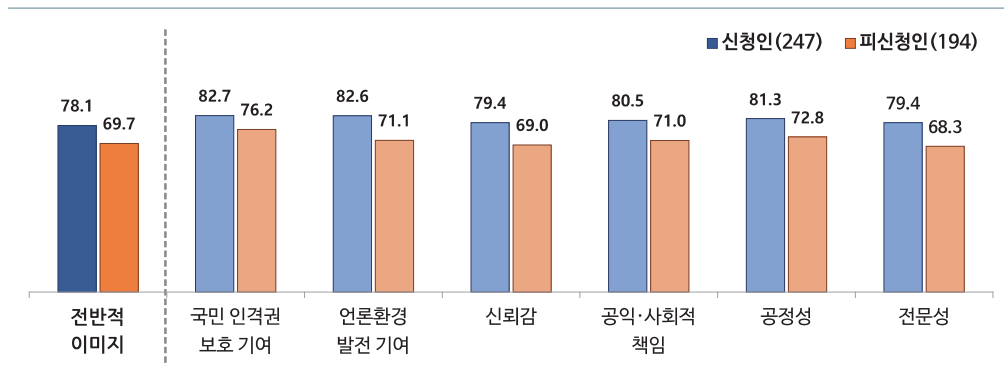
전년 대비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상담창구',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 만족도가 각 0.4점, 2.7점 상승한 반면, '조정 신청과정', '심리 전 절차 안내', '심리 후 절차 안내' 차원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심리 전 절차 안내' 및 '심리 후 절차 안내' 차원 만족도가 각 2.7점, 1.1 점 상승한 반면,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 만족도는 3.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종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경우 '기사 열람차단(삭제)'(91.7점) > '사과'(81.1점) > '정정·반론·추후보도 등'(74.9점) > '손해배상'(70.1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정정·반론·추후보도 등'(70.7점) > '기사 열람차단(삭제)'(70.6점) > '사과'(63.9점) > '손해배상'(41.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경우 '손해배상 금액'과 '사과'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였고, 피신청인의 경우 '기사 열람차단(삭제)'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의 전반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신청인의 경우 7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고, 피신청인의 경우 69.7점으로 전년대비 2.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이미지 평가 세부항목 중 신청인은 '국민 인격권 보호 기여', '언론환경 발전 기여', '공정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고, 피신청인은 '국민 인격권 보호 기여', '공정성', '언론환경 발전 기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인지도 조사에서는 83.0%가 조정신청 이전에도 위원회를 알고 있었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2.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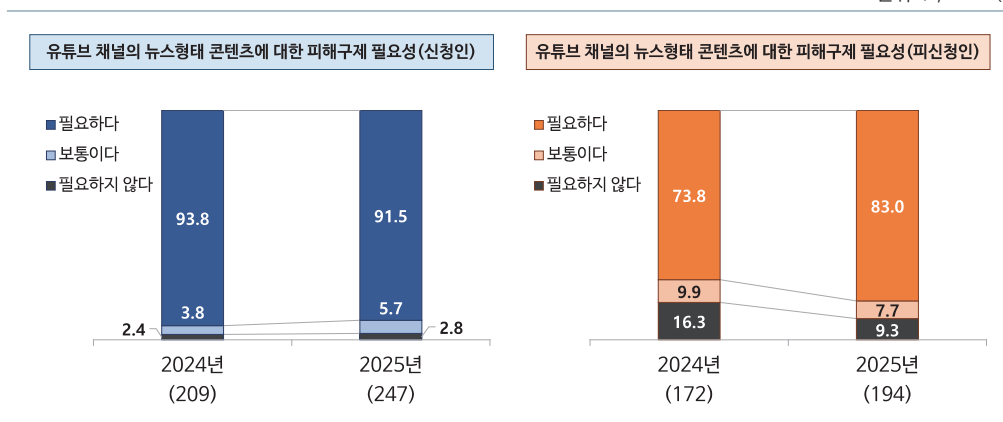
단위: 점, Base: ()



이번 조사에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피해구제 시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신청인의 91.5%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에 국민적 관심도와 공감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기할 만한 것은 언론사 피신청인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83.0%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인데, 일반 국민, 언론인들 모두 공통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대한 피해구제에 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신청인/피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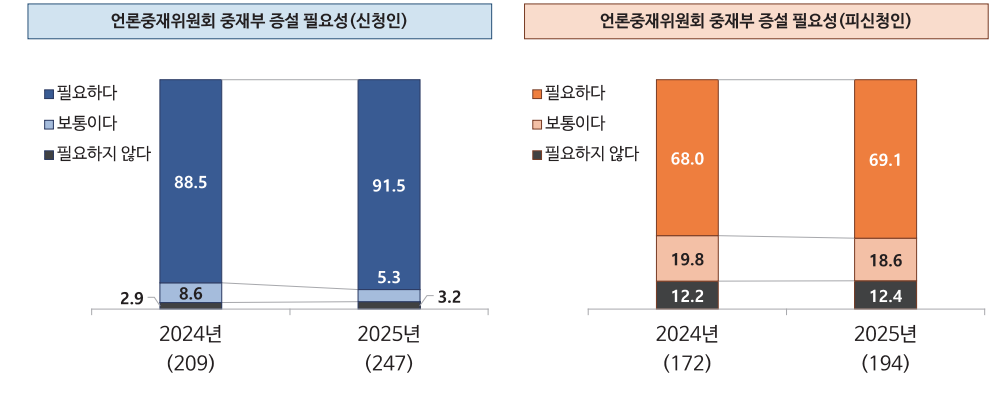
단위: %, Base: ( )



아울러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기사 수정/열람차단(삭제) 청구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도 병행하였다. 이 조사에서 신청인의 대다수인 96.4%가 '필요하다'고 대답해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신청인의 경우에도 과반인 61.3%가 '필요하다'고 대답해 언론사 또한 어느 정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증설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상당수(신청인 91.5%, 피신청인 69.1%)가 중재부 증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전년과 마찬가지로 조정·중재 사건의 신청 주체인 신청인의 긍정 응답이 피신청인에 비해 20%p 이상 높게 나타나 중재부 증설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 선택 이유를 물어본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75.6%가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증설 필요성

단위: %, Bas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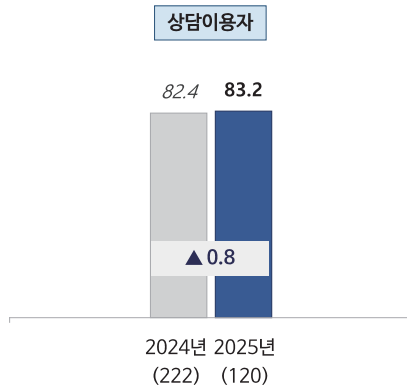


##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는 83.2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담원 친절상'이 86.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담원 경청자세' (86.5점), '상담내용 신뢰성'(85.0점), '문제해결 도움도'(80.1점), '상담이용 편리성' (78.6점) 순으로 나타났다.

###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



위원회 상담 후 조정신청 여부 및 미신청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이용자의 47.5%가 상담 후 조정을 신청했다고 응답했으며, 상담 후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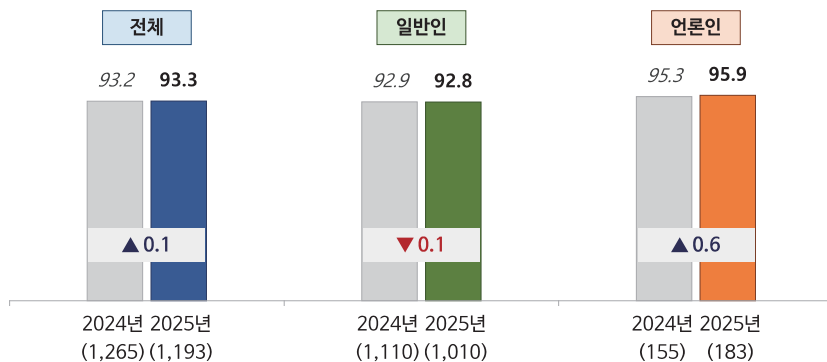
‘신청 절차가 번거롭거나 어렵게 느껴져서’(30.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신청매체가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조정 신청 가능한 기한이 지나서’(각 9.5%), ‘상담 내용이 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에 해당돼서’(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의 종합만족도는 93.3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수강자의 만족도는 92.8점, 언론인 수강자의 만족도는 95.9점으로 언론인 수강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교육수강자의 항목별 만족도는 ‘강사의 성의 및 태도’가 94.7점으로 가장 높고,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93.9점), ‘교육자료의 충실성’(93.1점), ‘주제 및 내용’(92.8점), ‘제도에 대한 이해’(92.1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



## 제3절 평가

2025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조정절차를 이용한 신청인,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의 종합적 만족도가 전년 대비 모두 고르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중재부의 심리 진행’ 차원이 중점 개선 영역으로 분류돼 조정절차 전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청인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2.7점 상승했으나,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3.3점 하락해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정절차 진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원회는 단순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조사 수행 업체, 실무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였다. 보고회에서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실질적 니즈,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담은 피드백을 공유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조정절차 개선에 필요한 수단 등을 마련해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상담이용자의 경우에도 종합만족도가 전년 대비 0.8점 상승한 83.2점으로 나타났으나 세부항목 중 '문제해결 도움도', '상담이용 편리성' 항목은 높은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와 전년에 이어 중점 개선 영역으로 분류되는 등 상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조사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피해구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조사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기사 수정/열람차단(삭제) 청구권 도입 필요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위 문항들에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답하여 새로운 형태의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2025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단순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만족도가 다소 미흡하다고 조사된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민적 관심도와 공감대가 높은 사안들에 대해 위원회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제5장 홍보

### 제1절 개요

2025년 위원회는 홍보 전략의 초점을 위원회 인지도 제고에 맞췄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운영 중인 홍보 채널별 전략을 재검토하였으며, 위원회 관련 보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언론사와 접점을 확대하고, 지역민 대상 광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자 홍보 채널별 운용 전략을 고도화하였다. 유튜브 이용자에게 쇼트폼 영상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관심도가 낮아지는 롱폼 영상 대신 쇼트폼 영상 제작 비중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블로그에서는 카테고리를 단순화하고 검색 유입을 늘리고자 일상 정보를 활용하였다. 인스타그램에도 유튜브와 블로그에 게시되는 콘텐츠의 미러링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유튜브 및 블로그 유입 경로를 확대하였다.

위원회는 언론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국내 미디어지, 통신사, 주요 일간지와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단의 호주 언론평의회 등 미디어 유관 기관 방문, 해외 미디어 콘퍼런스 참여와 교류로 해외 유관 기관에도 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위원회의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대전, 경남, 광주에서 각 1개월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를 집행하였다.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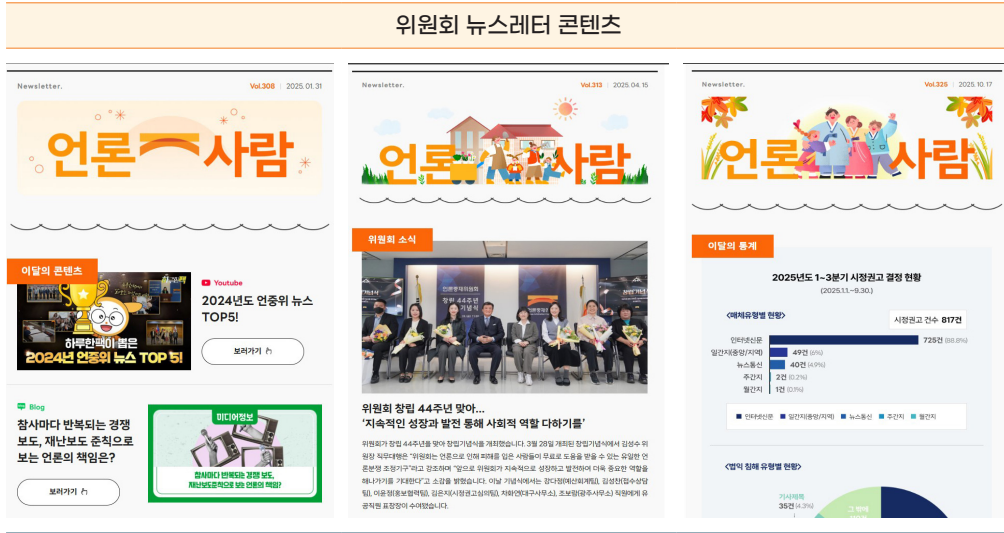
#### 1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 가. 뉴스레터 「언론사람」

위원회가 매월 뉴스레터 형태로 발간하는 대외홍보소식지 「언론사람」은 중재위원 등 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배포된다. 위원회 소식과 각종 업무 통계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하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발간물, 보도자료, 공지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한다.

다른 홍보 채널인 유튜브나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링크를 제공하여 다양한 홍보 채널로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배포대상 수는 2025년 12월 기준 약 1만 6,200명이다.



## 나. 블로그

위원회 블로그는 기존 언론법제, 조정중재 관련 정보 콘텐츠를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블로그 이웃 수 증가보다 콘텐츠 조회수와 방문자 수 확대가 위원회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언론법제나 미디어 이슈 외에 대중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콘텐츠를 [톡톡 일상] 코너에 게시하여 검색 유입을 늘리고자 하였다. 또한 유튜브 채널과 연계된 구독·댓글 이벤트, 위원회 소식 및 양질의 언론법제·미디어 정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충실한 정보 제공 채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2025년 주요 블로그 콘텐츠 목록		
코너명	코너 소개	주요 게시물 제목
언론법제	언론법제와 관련한 주제로 연구논문, 뉴스, 미디어, 영화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코너	몰래 녹음, 동의 없는 녹음은 어디까지 괜찮을까?
		트리거로 살펴보는 탐사보도와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 정보	각종 위원회 연구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을 소개하고, 최신 미디어 이슈와 관련한 뉴스를 주제별로 요약해 제공하는 코너	다른 기사 참조, 명예훼손의 정당한 항변이 될까?
		이번 주 미디어 동향: 플랫폼 저널리즘 시대, 언론 조정의 대상은 어디까지?

2025년 주요 블로그 콘텐츠 목록		
코너명	코너 소개	주요 게시물 제목
위원회 소식	주요 법정업무 사례 소개 및 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 보도자료 등 내부 소식을 전하는 코너	언론중재위원회,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언론중재위원회, 지난해 942건 시정권고 결정
개념어 사전	언론법제 및 위원회 언론조정중재 제도와 관련한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이해 설명하는 코너	유튜브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어뷰징이란 무엇인가?

## 위원회 블로그 콘텐츠



## 다. 유튜브

2025년 위원회 유튜브 채널은 이용자 노출이 쉬운 쇼트폼 위주의 영상 제작에 주력했다. 전문적인 언론법제, 미디어 이슈를 다루는 영상뿐 아니라 위원회 인지도를 제고하고 친숙한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게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유튜브 콘텐츠 목록	
구분	주요 게시물 제목
롱폼	징벌적 손해배상, 왜 나왔을까?
	모르는 사람이 우리집에...AI 장난에 경찰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대상' 보도 살펴보기!
쇼트폼	당신이 지나치게[될 뻔]한 2000년대 레전드 광고!
	2025 언론중재위원회 모의조정대회 현장! 하루아침에 아동학대범이라고!?

롱폼 콘텐츠에서는 미디어 이슈와 언론법제 관련 영상을 주로 게시하여 전문적인 정보 채널로서 정체성을 유지하였고, 쇼트폼 콘텐츠에서는 위원회 캐릭터인 ‘어니’를 활용한 AI 영상 시리즈를 기획·제작하여 친숙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하였다. 또한 수원, 전주, 대전 등 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위치한 도시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면서 위원회를 언급하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또한 과거 위원회가 제작하여 텔레비전으로 송출된 광고영상을 재발굴하여 쇼트폼 영상으로 게시하고, 인터넷 밈(Meme)을 활용한 영상으로 홍보 채널 구독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 라. 인스타그램

2025년 위원회는 인스타그램 채널을 주로 유튜브, 블로그에 게시된 정보를 미러링하여 유입을 유도하는 경로로 활용하였다. 언론법제 등 다소 난해한 주제는 간략하게 소개하며 블로그, 유튜브에서 확인하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이외에도 유용한 정보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평균 연령층이 낮은 점에 착안하여 수능 D-100, 수능 D-1, 고등학교 개학이나 대학교 개강일에 맞추어 젊은 연령층의 관심사에 맞춘 콘텐츠를 게시하고 친밀감과 공감대 형성을 모색하였다. 신조어나 새로운 밈(Meme) 소개, 유용한 AI 툴 추천 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사가 다양한 사용자들과 접촉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른 홍보 채널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위원회 블로그 이웃 추가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위원회 인스타그램 콘텐츠



#### 마. 대면 홍보 캠페인

위원회는 온라인 홍보 채널과 연계하여 '신속·공정·무료' 키워드를 활용한 홍보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위원회 서울사무처 건물(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위원회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이벤트 게임으로 경품을 제공하였다.

언론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가 많은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기자와 언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 캠페인으로 현장에서 위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약 320명 늘리기도 하였다.

#### 대면홍보캠페인 현장 사진



## 2 광고 집행

2025년 위원회는 단순노출 효과(Mere Exposure Effect) 혹은 에펠탑 효과라고 불리는 마케팅 전략에 기반하여 제한적 소수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는 공간에서 광고 횟수를 크게 늘리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기존에 광고를 집행하던 지하철 역사 등 열린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광고영상을 재생하여 접촉 밀도를 높이는 방식의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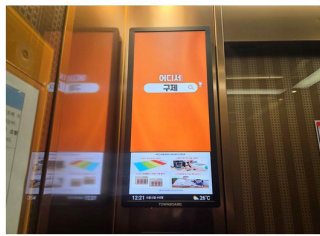
광고 대상 지역은 위원회 지역중재부 소재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엘리베이터 1대에서 최소 1,500회, 최대 3천 회 이상 광고가 재생되도록 하여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광고에 노출되면서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세부 광고 집행 내역		
매체명	광고기간	광고 노출 횟수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대전·경남·광주)	2025. 11. 1. ~ 11. 30.	대전(602대, 90.3만회), 경남(605대, 90.7만회), 광주(344대, 103.2만회)

### 광고 집행(오프라인 광고)



대전 지역 엘리베이터 광고



경남 지역 엘리베이터 광고



광주 지역 엘리베이터 광고

온라인 광고에서는 미디어, 법률 전문 매체에 역량을 집중하여 언론인과 법조인들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였다.

세부 광고 집행 내역		
매체명	광고 내역	광고기간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기자협회보, 법률신문	<b>쉽고 빠른 분쟁해결</b> <b>언론중재위원회</b>	2025. 11. 1. ~ 11. 30.

## 광고 집행(온라인 배너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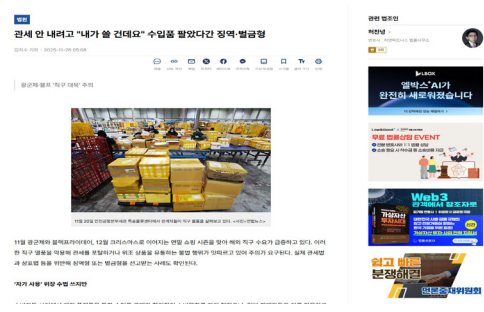


미디어오늘 배너광고

미디어스 배너광고



기자협회보 배너광고



법률신문 배너광고

## 3 국제협력 사업

### 가.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위원회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호주 언론사 및 유관 기관을 방문하였다. 호주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조사하고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언론 관련 동향을 파악한 뒤 위원회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였다.

우선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기구인 호주언론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를 방문했다. 민원의 빈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을 문의하고, 언론분쟁 관련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제 입안에서 의견 제시 등 평의회의 다양한 기능을 파악하였다. 이후 언론평의회의 분쟁해결절차와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비교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 위원회 대표단은 호주 유일의 독립 뉴스 제공 비영리 통신사인 호주연합통신(Australian Associated Press)을 방문하여 편집국장과 면담하였다. 연합통신의 고충처리제도 및 팩트체크부서의 운영, AI 등 새로운 미디어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호주 미디어 규제기관인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과 회의에서 미디어 공급자에 대한 규제기능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호주의 문제 인식과 대처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눴다. 오보 및 허위정보에 대한 법률적 규제 방안에 대하여 양 국가의 현황을 공유하며 상호 이해를 높였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호주 언론사들의 자발적 가입과 자율규제에 기반한 분쟁해결절차를 바탕으로 언론분쟁을 해결하고 있었다. 통신미디어청 역시 법적 규제나 강제력을 이용한 분쟁해결보다는 언론사들의 자율규제나 자정작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호주연합통신은 민간 언론사임에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광고 없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었다.

언론사의 자율규제와 자체적인 공정성 확보를 중요시하며, 규제기관도 언론의 자정작용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호주의 미디어 환경은 한국의 언론 환경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공했다.

2025년도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현황	
일정	2025. 11. 24. ~ 11. 29.
방문지	호주
방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언론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li> <li>• 호주연합통신(Australian Associated Press)</li> <li>•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li> </ul>
대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철환 감사(광주중재부)</li> <li>• 정회일 중재부장(서울제3중재부)</li> <li>• 김윤정 사무총장</li> <li>• 김진하 시정권고심의팀 차장</li> </ul>

###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호주언론평의회, 호주연합통신, 호주통신미디어청 방문

해외 기관에서 위원회와 교류하고자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2024년 5월 태국언론평의회(National Press Council of Thailand)를 방문하여 언론 분쟁해결절차와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바롱 림파트타마파니(Chavarong Limpattamapanee) 태국언론평의회 의장이 2025년 3월 24일 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언론분쟁 해결과 피해구제에 관하여 구체적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해외언론피해기구 교류협력



태국언론평의회 의장 위원회 방문

위원회는 이와 같이 해외 각국의 언론사 및 유관 단체와 꾸준히 교류하며 한국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의 특유한 조정중재시스템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나. 해외학술연구 협력

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동향을 파악하고 위원회의 연구·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매년 해외학술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영화 콘퍼런스(MCFCONF)에 참석하였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학제 간 통합, 제도적 발전 가능성 탐색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영상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저널리즘의 신뢰 위기,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 등 세부주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협력 대표단은 콘퍼런스에 참여한 각국 연구자들, 실무기관 관계자들과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위원회 및 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발제와 토론에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위원회는 해외 학술 콘퍼런스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미디어 이슈 및 세계 각국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참가자들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유관 기관 실무자, 학술연구자들과 네트워킹하며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를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분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위원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해외학술연구 협력 현황	
일정	2025. 6. 20. ~ 6. 22.
장소	싱가포르 난양기술대(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학술연구 협력 활동	제3회 국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영화 콘퍼런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재남 중재부장(서울제8중재부)</li> <li>• 하채은 중재위원(서울제5중재부)</li> <li>• 김윤정 사무총장</li> <li>• 최은진 기획팀장</li> </ul>

### 해외학술연구 협력



2025 해외학술 콘퍼런스 참석

## 제3절 평가

2025년도 위원회 홍보활동에서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성과는 홍보 채널 중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대국민 노출 기회를 최대한 늘려 위원회 인지도를 제고하고, 좀 더 친밀하고 익숙한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홍보 채널 운영에 변화를 준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튜브 게시물의 누적 조회수는 2024년 말 기준 누적 조회수(약 6만 회)를 크게 넘어선 약 26.6만 회의 누적 조회수를 달성하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20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가 누적된 것이다. 블로그 역시 2025년 한 해 동안 약 1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채널별 주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이용자층의 관심이 높고 시의성 있는 주제의 콘텐츠 개발에 주력한 것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오프라인 광고전략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라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여 대전, 경남, 광주 지역에 지역별 90만 회에서 100만 회에 달하는 집중적인 광고 노출로 단순노출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위원회 대표단의 해외 언론사 및 유관 기관 방문, 국제 콘퍼런스 참석으로 미디어 동향과 실무적인 대응방향을 탐색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국내에서도 미디어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사들과의 접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더욱 심도 있는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6년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홍보를 진행할 것이다. 입법 개정에 대비하여 위원회의 역할 변화, 제도 개선사항,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정책을 인포그래픽, 영상, 카드뉴스 형태로 가공하여 홍보 채널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유튜브 등 홍보 채널을 이용한 위원회 인지도 제고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다양한 홍보전략을 구상·실행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위원회의 언론피해구제 절차를 좀 더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제6장

## 기타 주요활동

## 1 사무처 업무환경 및 업무절차 개선

2025년 위원회는 변화하는 조직구조와 공공조직에 요구되는 업무방식의 전환에 대응하여 조직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였다. 특히 조직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업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업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강화하였다.

먼저, 지역총괄실 직제 개편으로 경기사무소에 지역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총괄실장이 부임함에 따라 경기사무소 내에 지역총괄실장실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지역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주도적인 업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주도사업의 일환으로 법원 등 주요 유관 기관과 접근성이 낮았던 부산사무소를 법원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로써 대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별 운영 예산 및 시설 규모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을 지역사무소 직원들과 협업해 추진함으로써 지역총괄실 신설의 취지와 기능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였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검사 수감 과정에서 계약 관련 절차 전반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 기반 절차 전반을 면밀히 점검·재정비하고,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전자계약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공공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계약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2026년 위원회는 전자계약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약 사무 전반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법정의 무구매 이행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전산 기반 계약 관리 범위를 소액 계약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계약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 확대와 업무 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사무공간과 시설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유연한 인적자원 운용을 지원하는 공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사무처 환경개선



지역총괄실장실 신설



부산사무소 이전

## 2 임직원 교육유형 내실화

위원회는 업무 환경 변화와 조직 규모 확장으로 업무 내용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직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업무 수행 기반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업무 여건 속에서도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복리후생 제도의 체계적 운용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임직원의 실무 역량을 제고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하였다.

먼저 조직개편과 인력 증원에 따른 업무 세분화로 교육 수요가 다양해진 점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심화하고 운영 체계를 안정화하였다. 전년도에 도입한 직급·직무별 맞춤형 교육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개인 단위 교육 중심에서 상담·시정권고·조정·중재 등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특화 교육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실무 연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효과성과 현장 활용도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인격권 보호 관련 제도의 발전과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 구성원의 학문적 전문성 축적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직무와 연관성 있는 국내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수료를 지원하여 임직원의 중·장기적 전문역량 강화를 뒷받침하였다. 아울러 동호회 활동과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연구모임을 지원함으로써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주도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였다.

연수 제도 측면에서는 국내 위탁연수를 재개하여 외부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퇴직 예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력 전환기 직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유지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 운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직무 특성과 근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업무 수행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3 전산 시스템 효율성·보안성 향상

위원회는 법정 업무 전반이 전산시스템을 매개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업무환경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전산시스템의 일부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업무 전반에 활용되는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먼저 조정·중재 및 기사심의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PDF 변환 및 리포팅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최신화하여 파일 변환 범위를 확대하고 처리 속도를 개선하였다. 이로써 hwpk 등 일부 파일 형식에서 발생하던 변환 오류를 자동으로 해소하고, 클립리포트의 저장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업무 처리 과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조정·중재시스템의 우편주소 라벨링 기능과 문서 서식 추가, 다량 사건 자료 동시 등록 기능 등을 보완하여 조사관 조정·중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시스템에 이전 화면 기억 기능을 구현하여 반복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선거기사심의 업무의 전반적인 처리 속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출력물 보안시스템의 워터마크 기능을 고도화하여 출력자 정보(직원 계정, 출력 일시 등)를 비가시성 워터마크로 적용하고, 별도 장비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외 발송 문서 및 각종 인쇄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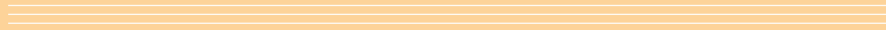
아울러 별도 호스팅 서비스로 운영하던 홈페이지 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여 기기 의존성을 해소하고 물리 장비 노후화에 대비하였다. 이와 동시에 홈페이지 서버에서 제공하던 전자신청시스템을 별도 서버로 이전·재구성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보안 취약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전자신청시스템에서는 접수된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신청자가 접수 결과 및 사건 처리 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026년 위원회는 전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시스템별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말 장비 및 업무시스템의 서버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그룹웨어 및 ERP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위원회 법정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PART



# 2026년도 업무계획

1. 2026년도 위원회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2026년도 위원회 핵심 추진과제
3. 2026년도 위원회 정책 목표 및 세부과제

## 1 2026년도 위원회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 대내외 정책 여건

- (미디어 정책환경 변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 여당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설치
-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활발) 허위보도에 대한 배액배상,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조정대상 포섭, 위원회 예산재원 변경 등 언론중재법 및 관련법 개정 논의 본격화
- (차별 예방 심의 요구) 2025년 국정감사에서 차별표현 등의 법익침해에 대한 예방 필요성이 강조되어 심의체계 강화 요구
- (인적자원 환경 변화) 휴직자 및 임금피크 전문직 증가, 정년 연장 가능성 등 인력구조 변화 가속화
- (혁신적 업무방식 변화) 공공부문 전반의 디지털 전환 및 AI 도입 가속화, 조직·인력운영 등 업무방식의 구조적 변화 요구

### ● 2026년도 위원회 업무추진 방향

- 이용자의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도 미디어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 온라인 조정제도(ODR) 도입의 구체화 및 이용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디지털시스템 도입
- 시정권고심의기준 개선 및 선거기사심의 공정성 제고
- 인적자원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인력 운용 계획 수립
- 생성형 AI 활용, 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추진

2 2026년도 위원회 핵심 추진과제



1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정제도 개선

1-1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 조정대상매체 확대
  - 허위보도 등이 유통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를 조정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 법 개정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조정사례 축적 및 분석
-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청구권 신설·확장
  - 온라인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심리 실무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제도화 모색
  - 추후보도청구를 범죄혐의나 형사상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적용하도록 피해구제법 위 확장
- 처리기간 단축 및 지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재부 증설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조정사건으로 인한 처리기간 지연을 해소하고자 법 개정을 통한 중재위원 증원 및 중재부 증설 도모
  - 인천광역시, 경기 북부 등 인구 규모나 언론사 수에 비해 중재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중재부 신설 추진
- 예산재원 변경 시에도 위원회 독립성 확보
  -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예산재원이 변경되더라도 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

1-2 디지털화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개선

- 온라인 조정제도(ODR)의 체계적 도입
  - 심리출석에 용이하지 않은 이용자의 피해구제 권리 행사를 위한 온라인 조정제도 도입 구체화
  - 모의운영이 가능한 토대 마련 및 중장기적 예산 계획을 통한 단계적인 운영방안 수립
  - 법원의 원격영상재판/원격조정 운영방식을 참조하여 온라인 조정제도의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
- 디지털 혁신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향
  - 조정절차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조정중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시를 활용하여 조정절차 및 위원회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 2 심의제도의 실효성·공정성 제고

### 2-1 명확하고 효율적인 시정권고 심의체계 구축

- 시정권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의체계 개선
  -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체계를 정비해 모니터링 정교화
  - 법의 침해보다 파생기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시정권고로 법의 침해 최소화
- 법의 침해 예방을 위한 언론인 교육 내실화
  - 차별금지 등 사회적 법의 침해 예방 내용을 포함한 교육용 교재 발간 및 적극 활용
  -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의 세분화 및 지역언론인 워크숍 확대 운영

### 2-2 선거기사심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 새로운 유형의 선거기사 모니터링 적극 대응
  - 증가하는 불공정 선거보도 및 AI 활용 기사 등 새로운 형태의 선거기사 관련 침해에 적극 대응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절차 개선
  - 개정된 위원회 기본규칙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을 반영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절차 개선 및 심의 공정성 제고
- 선거보도 심의기구 통합·상설 논의 관련 적극 대응
  - 선거보도 심의기구 통합논의 시 독립적인 언론분쟁 전문기관인 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편 및 상설화될 수 있도록 추진

## 3 업무효율성 강화를 통한 국민가치 실현

### 3-1 업무시스템 디지털화로 효율 개선

-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업무효율성 강화
  - 사무처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업무효율을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 AI 기반 사무처 업무 효율화 추진
  - 보고서, 통계, PPT 작성 등 다양한 업무분야에 AI를 활용하도록 장려 및 지원함으로써 사무처 업무효율성 제고
  - 조정사건, 발간물, 그룹웨어 게시물 등 내부자료의 AI 검색으로 사무처의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적용 검토

### 3-2 안정적·효율적 인력 등 운영계획 수립

- 인적자원 변화에 부합하는 인력운용전략 수립
  - 정부정책에 따른 정년 연장, 근무시간 변화 등에 대처하고 상시적으로 발생가능한 유휴인력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인력운용계획 수립
  - 다양한 직무형태에 부합하도록 인력배치, 처우개선, 성과관리 방안을 다각적·세부적으로 검토
  - 지역총괄실-서울사무처 간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으로 인력운용 및 업무성과 관리
  -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직제변경이나 채용이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하여 인력운용 안정성 확보
- 직무별 업무 역량 내실화 및 최적화된 근무환경 조성
  - 부서별 맞춤형교육 확대 및 개인 직무교육 수강 장려
  - 연구센터 용역보고서 결과를 적극 활용한 업무혁신 추진
  - 신규 채용인력의 빠른 조직 적응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 개선
  - 판례검색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으로 업무 능력 제고





# 부록

---

## 1 중재위원 현황

(2025. 12. 31. 현재)

서울 제1중재부		서울 제2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b>장창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li> </ul>	<b>박사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li> </ul>
<b>김석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일보 기자, 사회부장, 편집국 부국장</li> <li>· 대한사회복지회 회장</li> </ul>	<b>이우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천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li> <li>· 문화방송 외주국장</li> </ul>
<b>우득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li> <li>·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li> </ul>	<b>박의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TBC 경영기획 및 지원총괄 전무</li> <li>· 중앙일보 경영기획 및 지원총괄 전무</li> <li>· 중앙일보 M&amp;P 총괄대표이사</li> </ul>
<b>조지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li> <li>· (현)국회 개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li> <li>· (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li> <li>· (현)법무법인 다산 변호사</li> </ul>	<b>김흥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일보 부사장(서울본부장)</li> <li>·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상무이사)</li> <li>· 연합뉴스TV 보도국장</li> <li>·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장</li> </ul>
<b>김상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법률사무소 친 변호사</li> </ul>	<b>김 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김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li> <li>· (현)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li> </ul>

서울 제3중재부		서울 제4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정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li> </ul>	박정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li> </ul>
김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뉴스 논설위원, 편집인</li> <li>• 인하대학교 초빙교수</li> </ul>	이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전무</li> <li>• 한국경제TV 대표이사 사장</li> </ul>
성향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데일리 편집국장</li> <li>• 이데일리씨앤비 대표이사</li> </ul>	김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여기자협회 회장</li> <li>• 연합뉴스TV 전무이사</li> </ul>
김명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일보 편집국장, 논설실장, 편집인</li> <li>•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석좌교수</li> <li>• (현) 건국대학교 초빙교수</li> </ul>	김봉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신대학교 객원교수</li> <li>• 경향신문 전무이사</li> </ul>
김수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li> <li>• (현)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li> <li>• (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li> </ul>	도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li> <li>• 법무법인 진수 대표변호사</li> <li>• (현)대한변호사협회 제1공보이사</li> </ul>

서울 제5중재부		서울 제6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최육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li> </ul>	김지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li> </ul>
최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행정법원 법원장</li> <li>•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및 부장판사</li> <li>• (현)제18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li> </ul>	이춘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이사, 도쿄특파원, 기자</li> <li>•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li> <li>• 한국기자협회 회장</li> </ul>
이진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미디어연구소장</li> <li>•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li> </ul>	한윤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li> <li>•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li> </ul>
배정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논설위원</li> <li>•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li> <li>• (현)고려대 미디어대학원 특임교수</li> </ul>	김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S 정치부장</li> <li>•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li> <li>• (현)한국국토정보공사 옴브즈 위원</li> </ul>
하채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li> <li>• (현)매일 법률사무소 변호사</li> <li>• (현)대한변호사협회 제2국제이사</li> </ul>	김민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 대변인</li> <li>• 대한변호사협회 제1공보이사</li> </ul>

서울 제7중재부		서울 제8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이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li> </ul>	윤재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li> </ul>
송대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논설위원, 논술사업본부장, 교육사업본부장</li> <li>• 스포츠동아 대표이사(발행인), 고문</li> </ul>	김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향신문 기자</li> <li>• 한국개발연구원(KDI) 펠로</li> <li>• (현)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li> </ul>
이유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논설위원</li> <li>• 뉴스1 편집국장, 대표이사</li> </ul>	김중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경제신문 부국장</li> <li>• (현)ROTC언론인회 회장</li> <li>• (현)경기대 교수, 빅데이터센터 소장</li> </ul>
이진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등</li> <li>• (현)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li> </ul>	이원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일보 산업취재부장</li> <li>• JTBC 방송정책실장</li> <li>• (현)루카에이아이셀 비상임 고문</li> </ul>
권수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법인 올흔 변호사</li> <li>• 법률사무소 정상 변호사</li> <li>•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부 변호사</li> </ul>	채휘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li> <li>• (현)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li> </ul>

부산중재부		대구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신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li> </ul>	김상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li> </ul>
유상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고등법원 판사</li> <li>• (현)유상순 법률사무소 변호사</li> </ul>	송의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일보 사회부 부장, 대구총국장</li> <li>• (현)대구가톨릭대 교수</li> </ul>
채인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일보 논설위원, 국제외교안보 에디터</li> </ul>	홍권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일보 대구총국장</li> <li>• 대구한국일보 편집장</li> <li>• (현)대구가톨릭대 교수</li> </ul>
소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li> <li>•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장내괴롭힘 심의위원회 위원</li> <li>• (현)법무법인(유) 세한 파트너변호사</li> </ul>	이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li> <li>• (현)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li> <li>• (현)법무법인 마음과마음 대표변호사</li> </ul>
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li> <li>• (현)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li> <li>• (현)법무법인 시우 파트너변호사</li> </ul>	임성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li> <li>• (현)대한공증인협회 부협회장</li> <li>• (현)법무법인 삼일 변호사</li> </ul>

광주중재부		대전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유석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석</li> </ul>
이철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li> <li>•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원장</li> <li>• (현)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li> </ul>	정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일보 부국장</li> <li>• (현)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li> </ul>
김성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도일보 편집국장 대표이사</li> <li>• 광주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li> <li>• (현)광주 전남언론포럼 이사장</li> </ul>	강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li> <li>• (현)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li> </ul>
김덕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li> <li>•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li> <li>• (현)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li> </ul>	송인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1대 대심</li> <li>•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li> <li>• 세종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li> <li>• (현) 한국소통학회 회장</li> </ul>
임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li> <li>•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특별위원</li> <li>• (현)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li> </ul>	안현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법인 서림 구성원변호사</li> <li>• (현)법무법인 대전제일 구성원 변호사</li> </ul>

경기중재부		강원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신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li> </ul>	김병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li> </ul>
이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C 심의실 심의위원(국장)</li> <li>· iMBC 사외이사</li> </ul>	이관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공사 책임연구원</li> <li>· (현)강원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li> </ul>
박흥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일보 정치·경제·사회부장 편집국장</li> <li>· (현)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 콘텐츠 자문위원장</li> </ul>	원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 실장, 해외문화홍보원장, 문화예술정책실장</li> <li>· 한림대 글로벌협력대학원 객원교수</li> </ul>
황선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뉴스 기자</li> <li>· 국회방송 보도위원</li> <li>· YTN 디지털센터장</li> </ul>	박용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지방법원 예비판사 및 각급 판사</li> <li>·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변호사</li> <li>· (현)법무법인(유) 동인 대표변호사</li> </ul>
이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검사</li> <li>· (현)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li> </ul>	안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li> <li>· (현)강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li> </ul>

충북중재부		전북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성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li> </ul>	임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li> </ul>
김동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뉴스 기자</li> <li>• YTN 총청본부장</li> <li>• 중부매일 논설위원</li> </ul>	이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일보 호남취재본부장</li> <li>• 남부대 교양학부 조교수</li> <li>• (현)전라남도 선거방송 토론 위원장</li> </ul>
김찬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일기획 차장, 씨티은행 홍보 이사</li> <li>• 한국PR학회 회장</li> <li>• (현)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인문사회대학장</li> </ul>	조운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향신문 문화부장, 후마니타스 연구소장</li> <li>• 경향신문 논설위원</li> </ul>
김현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뉴스 상무이사, 기자</li> <li>• (현)네이버 뉴스제휴위 정책위원</li> <li>• (현)에코비트 사외이사</li> </ul>	신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 위원</li> <li>• (현)한국국가법학회 회장</li> <li>• (현)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ul>
이규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소청심사위원회 위원</li> <li>• (현)법률사무소 산남 대표변호사</li> </ul>	이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법인 더샘 변호사</li> <li>• (현)법률사무소 길담 대표변호사</li> </ul>

경남증재부		제주증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오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창원지법 부장판사</li> </ul>	홍순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li> </ul>
최성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공사 기자, 포항방송국장</li> <li>• (현)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이사</li> </ul>	현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S 논설위원</li> <l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li> <li>• (현)동국대 사회과학대학 대우교수</li> </ul>
김상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공익법무관</li> <li>• (현)김상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변호사</li> </ul>	허상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li> <li>• 제주도 소청심사위원</li> <li>• (현)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li> </ul>
박미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경남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li> <li>• (현)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li> <li>• (현)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li> </ul>	김치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일보 정치경제부장</li> <li>• 제주특별자치도 정책보좌관실 보좌관</li> </ul>
최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정강령 운영 자문위원</li> <li>• (현)광주고검 국가승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li> <li>• (현)법무법인(유)랜드마크 대표변호사</li> </ul>	고경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li> <li>• 법무법인 우리 소속변호사</li> <li>• (현)법무법인 승민 대표변호사</li> </ul>

## 2 2025년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관리항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인건비	8,476	8,461	15
경상비	경상비	2,740	2,674	66
사업비	조정 및 심의사업	2,371	2,200	171
	조사 및 연구사업	702	666	36
	홍보 및 교육사업	256	253	3
	소계	3,329	3,119	210
합계		14,545	14,254	291

## 3 2025년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발의일	대표 발의 의원	주요 내용
2025. 3. 10.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정신청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 삭제요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함
2025. 9. 25.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조정신청 시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함
2025. 11. 14.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위보도·허위조작보도·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등의 개념을 신설하고 중재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조정신청기한을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으로 확대하고, 정정보도 등의 게재방식을 명문화함
2025. 11. 27.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위원회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2025. 12. 30.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4 2025년 주요 발간물 목록

발간물	발간부수	발간주기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매회 650부	연 3회
계간 언론중재	매회 800부	연 4회(계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800부	연 1회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과제당 50부	연 1회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	e-Book	연 1회
미디어법제 연구보고서	100부	연 1회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e-Book	연 1회
시정권고 사례집	40부/e-Book	연 1회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200부	연 1회
연간보고서	300부	연 1회
언론  사람	뉴스레터	연 24회 (월 2회)



# 2025 연간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이 책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과제 등을 담아서 기술한 연간보고서입니다.

---

인쇄일	2026년 2월 23일
발행일	2026년 2월 28일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팩스	02) 397-3029
홈페이지	<a href="http://www.pac.or.kr">http://www.pac.or.kr</a>
제작	(주)계문사 02)725-5216

---

- 이 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